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CONTENTS

Part 1 조세지원

조세지원 개요

- 007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 00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0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015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017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019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021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 02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023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24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026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Part 2 금융지원

금융지원 개요

- 1 투·융자**
 - 035 창업기업지원자금
 - 038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040 신성장기반자금
 - 042 긴급경영안정자금
 - 045 사업전환자금
 - 047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049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 050 온렌딩(On-lending)
 - 052 KoFC 프론티어챌프
 - 054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 2 보증**
 - 056 기술보증기금
 - 061 신용보증기금

Part 3
출연지원

3 기타

- 064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 066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 067 R&D평가등급 특례보증

출연지원 개요

1 미래창조과학부

- 07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077 나노융합2020사업
- 080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 08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 08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 088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 090 Giga KOREA 사업
- 09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 094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096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 098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100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2 산업통상자원부

- 101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 105 산업융합촉진사업
- 107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 1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신산업)
- 11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 11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 117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 120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123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125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 127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129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31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 13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135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 138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 140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143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 145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 148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 151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3 중소기업청

- 153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 156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 159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 161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163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16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168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 17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17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175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 177 창업맞춤형사업
- 179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 18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183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4 기타

- 185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국토교통부)
- 187 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 190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 19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 19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 195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 197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산림청)
- 199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Part 4 인력지원

- 203 전문연구요원제도
- 207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 210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213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215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 217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 219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 220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Part 5 기술지원

- 221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 223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 226 기술인재지원사업
- 228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 229 브레인스카우팅사업

1 기술개발

- 233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 235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 236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 239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 241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 243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2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 245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 248 기술신탁사업
- 250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3 특허전략

- 252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54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4 기타

- 256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 258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혁신 지원사업
- 260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261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사업
- 263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Part 6 인증지원

1 기업인증

- 267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
- 269 벤처기업 확인
- 273 이노비즈 인증

2 기술제품인증

- 275 신기술(NET)인증제도

- 277 신제품(NEP)인증제도
- 279 녹색인증제도
- 282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3 시상

- 284 IR52장영실상
- 286 이달의 엔지니어상
- 288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 289 대한민국기술대상
- 29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 293 기술경영(MOT) 우수기업 포상

Part 7 구매지원

- 29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299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 300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도
- 302 우수제품 지정제도
- 304 성능인증·보험제도

부 록

- 30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311 R&D도우미센터(www.rndcall.go.kr)
- 312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www.smehappy.re.kr)
- 313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www.born2global.com)
- 314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rsec.or.kr)
- 315 이공계인력증개센터(www.RNDJOB.or.kr)
- 316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 317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 318 조세·법령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 319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320 ITFIND(www.itfind.or.kr)
- 321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
- 322 중소기업 범위기준

INDEX

- 327 관련부처별
- 331 지원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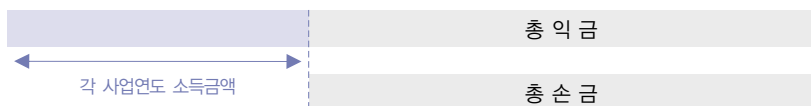
조세지원 개요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I 관련용어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소득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세법상의 수익)에서 총손금(세법상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2 결손금

- 총손금이 총익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이월결손금: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는 다르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아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3 익금

- 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을 말함
 -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4 손금

- 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을 말함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회계상 손금에 인정되지 않은 것

5 비과세소득

-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나 공익상 또는 정책상의 이유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소득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소멸함

6 소득공제

- 조세정책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써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

7 세액감면

- 특정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경감해주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1)} \times \frac{\text{감면소득}^{2)}}{\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

1)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2) 감면소득이란 과세표준에 포함된 감면소득을 말함.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등이 어떤 소득에서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8 세액공제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 때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금액(특정 지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II 법인세 계산구조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

세 액 계 산 순 서	
소득금액 계산단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과세표준 계산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세 액 계산단계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가 산 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 「법인세법」상 소득

▶ 10년 이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 공제순서(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10%(과세표준 2억원 이하), 22%(200억원 초과)
2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법인세법」이 정한 의무 위반시 제재목적으로 부과

▶ 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Ⅲ 유의사항

1 최저한세의 적용

- 정책적인 지원목적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과 재정확보 측면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조특법 제132조)

현행(최저한세, 법인기준)	
①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10%(중소기업은 7%*) 단,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2%, 1,000억 초과분은 16%	①, ② 중 많은 금액
② 산출세액(각종 감면후의 법인세액)	

* 2011년부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 8%, 이후 2년간 : 9%

2 이월공제 적용

-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3 중복지원의 배제

- 동일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조세감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배제

4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을 적용받은 자가 법정요건을 위배하거나 법정의무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은 부분 상당액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세금으로 추징함으로써 법정요건의 준수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
-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연 10.95%)

5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쉽게 검색가능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지원대상
중소·대기업

1.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한 때에 매출액(수입금액)의 3%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TIP

장차 발생할 비용을 미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익금(회계상 수익)으로 환입함으로써 과세이연(세금납부시기 연장) 효과를 가지는 간접감면제도입니다.

✓ 적용범위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

- 다음의 활동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됨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적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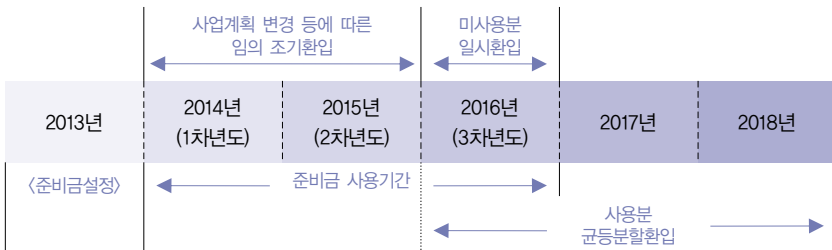
-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 사업연도말에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함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 예상비용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됨. 다만, 이 경우 동 금액 만큼 잉여금처분시 당해 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적립한도

- 과세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의 3%

✓ 환입절차(익금산입)

-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 사용분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균등분할 환입
- 위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 환입
 - 미사용분은 익금 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연 10.95%)



✓ 준비금 적립 및 사용결과신고 절차

- 관할세무서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제출(매년 과세표준신고시)

✓ 적용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준비금 적립 가능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일몰기간 없이 영구화)(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상의 세액공제 적용비용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

TIP

해당비용의 세액공제 적용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실제 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제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times$ 50%
 -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중소기업 유예기간 포함),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15%, 이후 2년간은 10% 적용
- 중견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8%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times$ 40%
 - *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times$ (3~6%)*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times$ 40%
 - * 공제율(%) = 3 + (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 $\times$ 100 $\times$ 0.5

- 단, 공제율의 한도는 6%이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함

* (관련페이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공제비율 적용 : p.13

✓ 증가발생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액발생기준만 적용 가능
-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보다 적은 경우 증가발생기준 적용 불가

✓ 특이사항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규정 미적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세액공제 적용시 정부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 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구분	비용
1. 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동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제외한다) ②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뭇)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등만 해당한다)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

구분	비용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 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삭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적용범위

- 신성장동력분야
 - 조특법 시행령(별표7)상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원천기술분야
 - 조특법 시행령(별표8)상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 공제비율

-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대기업의 경우 : 당해연도 발생액 × 20%

✓ 특이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구분경리해야 함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비용 전액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함
- 최저한세 일부배제
 -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규정 미적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세액공제 적용시 정부출연금(조특법 제10조의 2)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 시설
 - 공구,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자산(무형고정자산 및 건축물 등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연구시험용 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 특허, 실용신안, NET(신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 공제비율

- 당해연도 설비투자금액 $\times$ 10%

✓ 특이사항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증설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불가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부대비용 포함)의 경우 미적용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 추징
 - * 이자상당가산액 : 1일 0.03%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안전행정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5.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 (관련페이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차이 : p.267
- 적용범위 : 취득한 후 4년 이내의 기업연구소로서 신고하여 인정 받은 부동산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직접 사용에 한함)
 - 과세시점에서 요건미비로 과세되어도 사후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기과세된 취득세는 취소(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해당 없음)

TIP

건축물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건축물 중에 실제 사용면적비율만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세제

- 취득세 및 재산세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 면제가능(타 용도 변경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상황으로 면제여부를 판단

✓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시 면제된 취득세 추징

* '연구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날을 말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 적용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감면대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3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6.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 분야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3인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
- 적용범위물품
 - 매년 품목 조정에 의해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1])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관세감면 고시물품[별표1]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TIP 기지재는 품목고시를 통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며,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비율

- 관세액의 80%

✓ 사후관리

- 관세감면 물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면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음(단, 세관장 승인물품 제외)
 - 내용연수 5년 이상 물품 : 3년, 4년 : 2년, 3년 이하 : 1년 이내
 - 타용도 사용가능성이 적은 물품 : 1년 이내
 -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 1년 이내

✓ 신청절차

- 수입신고수리前(보통 수입신고時)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참고 : 연구용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구분	내용	일정	기관
산업계 수요조사	2014년 하반기~2015년 상반기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13. 10월~12월 중	기업→산기협
품목조정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품목조정(안) 확정	'14. 2월 중순까지	-
미래부 제출	품목조정(안) 제출	'14. 2월 말까지	산기협→미래부
기재부 심의	품목조정(안) 심의 및 확정	'14. 3월~6월	기재부
대상품목 확정	신규품목 고시	'14. 7월(예정)	기재부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 (02)3460-90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2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지원대상
중소기업

7.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기술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적용범위
 -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동법 제10조의 기술거래기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취득한 것

✓ 공제범위

- 공제비율 : 당해 취득금액의 7%(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지원대상
연구원 ▼

8.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대통령령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
- 적용범위 : 조특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두 가지 경우에 적용 가능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항)
 -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자

✓ 공제비율

- 근로소득세*의 50%
 -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 적용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9.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출연금

✓ 익금산입방법

- 연구개발비 지출 :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 :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
- 연구개발자산(이외의 자산) 취득 :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 등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 특이사항

-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 신고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 적용대상

- 지원대상(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승인받은 기업에 한함)
 -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적용범위
 -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첨단제품 관련 산업

✓ 감면범위

- 감면비율
 - 해당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0% 감면
 - 이후 2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 감면한도
 - 감면세액 총합계액이 다음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경우 ①과 ②의 합계금액을 감면한도로 함
 -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②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1천만원씩 곱한 금액과 사업용 자산* 투자누계액의 20% 중에 적은 금액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다음의 항목은 제외함

- 토지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선박 및 항공기/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설설비 포함)과 건축물/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 특이사항

-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정리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동 감면규정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 기타 세액감면제도와 중복적용 배제

❑ 적용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조세지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지원대상
연구원

11.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적용대상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적용범위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전담요원에 한함

✓ 비과세 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로서 월 20만원 한도

TIP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와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이 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기술혁신지원 관련 소득세 비과세 제도

-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제도
 -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발명진흥법」 제2조)
 - 당해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문의처

국세청 콜센터 126
관할세무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2



Part **2**

금융지원

- 1 투·융자
- 2 보증
- 3 기타





금융지원 개요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I 관련용어

1 투·융자지원/보증지원

- 투자지원 :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그에 따라 생긴 이익을 수익으로 하는 지원제도
- 융자지원 :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지원제도
- 보증지원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는 제도

2 투·융자 관련

- 대출금리 :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로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국고채금리 :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
-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매분기 결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공지사항 ‘2013년 매분기 적용될 공자기금(융자계정) 금리’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 정책자금에 대해 지원기관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하는 방식, 직접대출의 일부를 투융자복합금융 방식으로 지원
- 대리대출 : 정책자금에 대해 지원기관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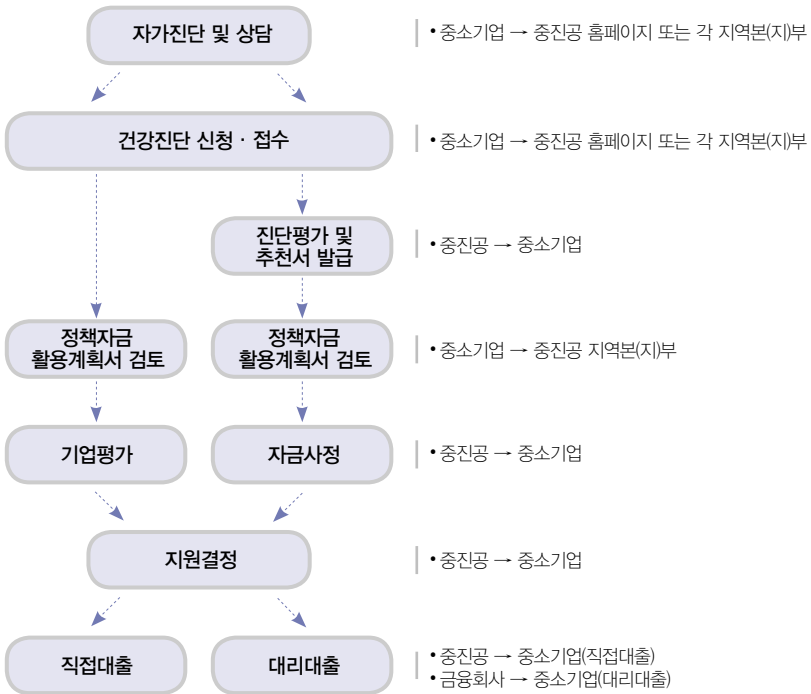
- 투·융자복합금융 방식 :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이익 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3 보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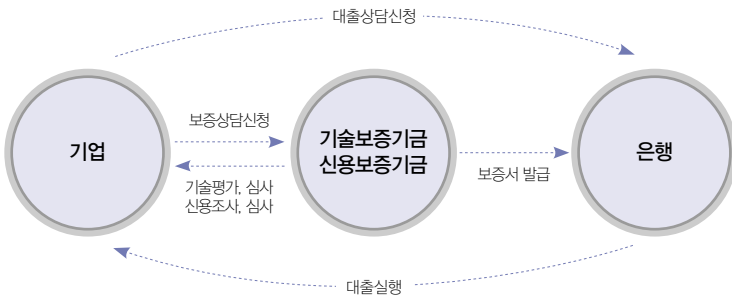
- 대출보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회사채보증 :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II 체계도

1 융자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의 경우)



2 보증지원



1 융자제한 대상(중소기업진흥공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 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중진공 홈페이지 참고)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CO 등 환해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 제외)
-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 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 등은 예외

2 용자지원 제한업종(중소기업진흥공단)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증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 학원(855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및 '나들이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1인창조기업포함)
 -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포함),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년도 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 (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 용자규모

- 용자규모 : 1조 4,300억원

✓ 용자방식 및 방식

● 창업기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09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략사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기업

■ 전략산업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업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상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건설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3,00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3.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인 중소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용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 자금으로 용자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 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9,35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4.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 긴급경영안정사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

* 단,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신청가능

✓ 지원내용

1. 긴급경영안정사업

- 지원내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제품 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
- KICO 등 환해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13.4.3 기준) 중 중소기업
- 對이란 제재로 인한 이란수출 피해 기업(최근 1년간 이란수출비중이 30%이상)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대출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13.4.3 기준) 중 중소기업은 연 2%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123개 개성공단 가동기업의 모기업('13.4.3 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 만기 원금 및 이자 일시상환으로 운영하되 1년 이내 원금 연장 가능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2. 수출금융지원사업

● 지원내용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단, 수출계약 기간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용자규모 및 방식

- 용자규모 : 1,000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2

1-5. 사업전환자금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단,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하기(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에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세부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원)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원

✓ 융자규모 및 방식

- 융자규모 : 1,70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8920



금융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세부내용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는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 (대출기간 동안 고정)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 이익연동이자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 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5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 융자규모 및 방식

- 융자규모 : 1,700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업체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신청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금융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7.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I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SW·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 지원내용
 - 일반담보대출 : 부동산 등 물건담보를 이용하여 대출
 - 기술담보대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과제당 최고 20억원(소요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융자지원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에서 1%p 차감한 금리적용('13.1분기 1.89%)
 - * 금리 계속 하락시 최저 대출금리는 1.6% 적용

✓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71.8억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22(월)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수시)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710-1234, 123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1828



금융지원

관련부처
한국정책금융공사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8. 온렌딩(On-lending)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 등의 미래전략산업이
균건히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는 기업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해당하는 기업
- 우대대상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녹색산업 : 녹색인증 기술 및 사업분야 해당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 미래기획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7개 부문, 산업통상
자원부가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해당기업, 6T영위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해당기업
 - 수출중소·중견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청
등 정부선정 수출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기업
 - 기술력평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서 기준등급 BBB이상, 관계중앙부처
에서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은 중소기업, 중개금융기관 자체
기술력평가 프로그램 적용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시설자금대출	건당 1억원 이상 ~ 50억원 이내	건당 1억원 이상 ~ 250억원 이내
운전자금대출	건당 1억원 이상 ~ 20억원 이내	건당 1억원 이상 ~ 100억원 이내
기업별 사용한도 (잔액기준)	100억원	500억원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업은 특별온렌딩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기 사용한도 2~3배까지 확대가능

- 온렌딩대출 금리(온렌딩 기준금리+스프레드)
 - ‘온렌딩 기준금리’는 자금유형(시설, 운전)에 따라 채권기준금리 또는 CD기준금리와 연동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 ‘스프레드’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정한 금리 상한 범위 내에서 각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 신용위험분담제도 : 재무적 신용도는 부족하나 미래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을 돕는 차원에서 중개금융기관이 감수해야하는 온렌딩대출 원리금 미회수위험(채무불이행위험)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일부 분담하는 중소기업 신용보강제도
 - 신용위험분담비율 : 중소기업은 시설·운전 자금은 온렌딩대출 금액의 50% 이내, 지방중소기업 및 특별온렌딩은 온렌딩대출 금액의 60% 이내
 - 지방중소기업은 서울·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특별온렌딩은 신성장동력산업·녹색산업 관련기업 및 고용창출 해당기업을 지칭함
- * 단,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위험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녹색분야에 한해서는 40% 이내 신용위험분담 요청가능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술력 우수평가자료를 중개금융기관으로 제출

문의처

www.kofc.or.kr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금융2부 (02)6922-5305, 5326



금융지원

관련부처
한국정책금융공사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9. KoFC 프론티어챔프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 정부의 'World Class 300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고 공사 신용등급 BB+ 이상인 기업
 -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 타기관(은행, 정책금융기관 포함)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매출실적 6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2년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2% 이상인 기업
 - 최근 2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양수(+)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KoFC Frontier Champ로 선정한 기업에 대하여
직접대출 및 투자 지원에 있어서 우대
- 세부 내용
 - 직접대출 : 시설자금/운전자금
 - 직접투자 : 공모사채인수 등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이상 ~ 20년 이내
 - 운전자금 : 3년 이내
- 지원한도
 - 시설자금 : 300억원(연간 신규승인누계액 기준)
 - 운전자금 : 100억원(연간 신규승인누계액 기준)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매월)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신청

↘ 문의처

www.kofc.or.kr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금융1부 (02)6922-6391, 6392, 7093



금융지원

관련부처
환경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1-10.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환경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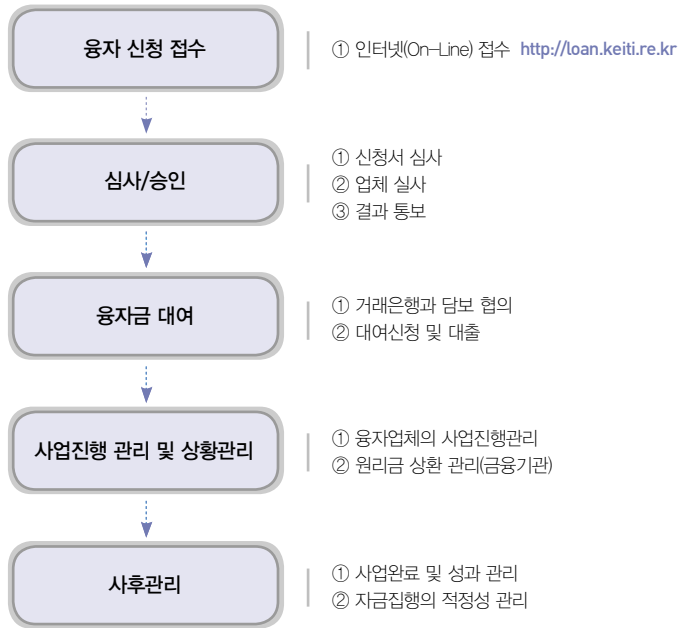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산업 영위기업

✓ 지원내용

사업명	융자규모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 한도액	대출 금리	대출기간
환경산업 육성자금	140억원	중소환경 산업체 또는 환경시설 제작업체	시설자금	10억원	2.85%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성장기반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해외진출자금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	730억원	중소 재활용 사업자	시설자금	25억원	2.85%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억원		
			기술개발자금	4억원		
			경영안정자금	5억원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유통·판매지원자금	2억원		
환경개선 자금	480억원	중소 기업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30억원	2.89% (변동금리)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년 1월, 7월, 신청공고 후 개시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용자관리시스템 (<http://loan.keiti.re.kr>)을 통해 신청

↳ 문의처

www.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02)380-0252~9
환경부 환경산업과 (044)201-6712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2-1. 기술보증기금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신청자격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신기술사업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이 됨.

- 중점 지원대상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등
 -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력 인정기업, 기술관련상 수상 기업
 - 우대내용 : 우선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85%) 우대)
- 보증금지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보증금지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대표이사 및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인 기업 등

✓ 보증운용

- 보증한도 : 일반보증은 최고 30억원 이내
 - 기업의 신용도, 기술력,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
 - 일부자금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 가능
- 보증료 : 최저 0.5~3.0%
 - 기업평가등급,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에 차등적용
- 보증비율 :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 적용

✓ 주요 보증상품

- 정책자금 One-Stop 지원보증

구분	대 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청)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창업기업지원자금 : p.35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이전받은 기술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관련페이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p.38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청)	•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등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파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등 * (관련페이지) 신성장기반자금 : p.40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지방자치단체)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 유·무선통신, SW 및 콘텐츠, 정보보호 등 IT관련 기술개발기업 * (관련페이지)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 p.49

•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

구분	대 상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 • 시행은행 :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우리, 외환, 신한, 경남,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금융기관과의 보증로지원 협약보증	• 우선지원대상 : 신성장동력기업(창업, 수출, 녹색성장, 기술혁신형, 설비투자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 시행은행 : 국민, 신한, 기업,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보증 (금융기관)	• 이노비즈기업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인증보증 (금융기관)	•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특허청)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 p.66
공공구매론 협약보증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된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기업 • 시행은행 : 하나은행
녹색브릿지론 협약보증 (기업은행)	•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주업체로서 모기업이 기금과 은행에 추천한 협력기업으로 기금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기업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증제도

• 구매자금용

-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구매자금용방식으로 전환,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제도

• 네트워크론

- 우량모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모기업과 납품거래에 필요한 생산,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과 대출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

• (잠재)수출기업 지원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하는 제도

- 담보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제도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
- 기타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
 - 회사채보증 :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
 - 사업자 분양자금보증 : 사업장부지(각종 산업단지),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등의 분양사업장을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일반분양 받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중도금 및 잔금(계약금 제외) 등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 지역전략산업지원제도 :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차별화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을 지원
- 고용창출 특별 운전자금 지원
 -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
- 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 도약기에 접어든 벤처기업 중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제품 사업화, 신규수주 등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기회 확대를 유도
- 그 외 문화산업완성보증,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보증, R&D보증, 특허기술가치 평가 연계보증 등

✓ 추진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예비검토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생산능력 등을 확인
심사·승인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 혹은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
(<http://www.kibo.or.kr>)에서 신청

문의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기업



2-2. 신용보증기금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운용

-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최고 30억원 이내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일부자금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 가능
- 보증료 : 최저 연 0.5%~3.0%
 -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에 차등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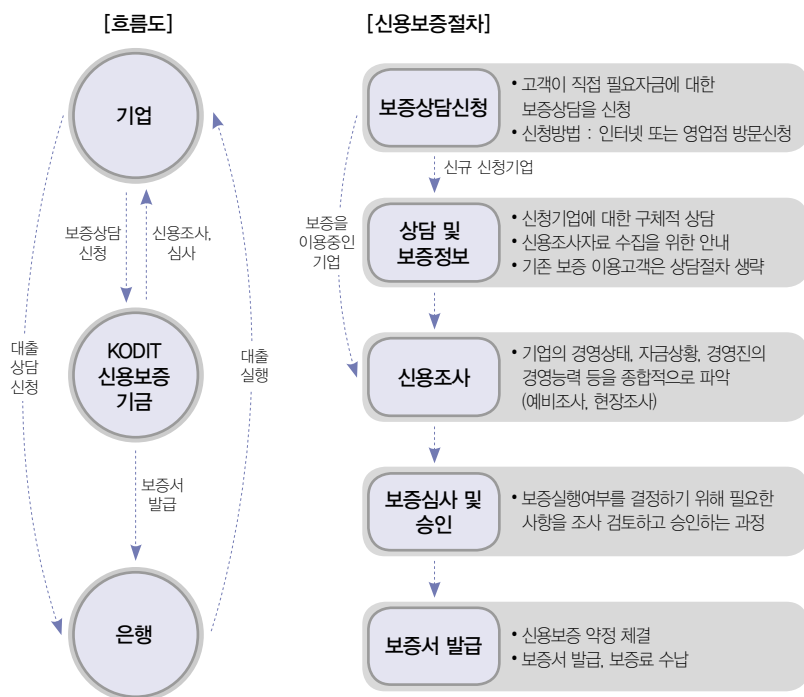
✓ 보증상품

일반운전자금	기업일반자금보증(기업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할인어음 등)
창업자금	혁신형창업기업보증 / 청년창업특례보증
구매자금	구매자금융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수출입자금	무역보증
시설자금	일반시설자금보증 / 임차자금보증 / 태양광발전시설자금보증 / 선박금융 시설자금
비금융상품	이행보증 / 담보어음보증 /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보증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협약자금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 IT 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특화보증프로그램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 고령친화기업 섬김보증 프로그램 / 나들가게 다정다감보증 프로그램
건설공사 브릿지론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 보증우대

혁신형 기업	- 기술진보 기업 -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 기술혁신형 기업 - 혁신제품 생산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6T)영위기업 /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수출중소기업 /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부품·소재 전문기업 / 혁신형 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생산성경영체제(PMS) 인증기업
우대부문 보증	-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 정부 등 선정 우대기업 - 인증마크 획득, 지식관련 수상기업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혹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http://www.kodit.co.kr>)에서 신용보증상담 신청

↘ 문의처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금융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특허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3-1.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화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

✓ 지원대상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 연구소 보유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
- 동일 기술에 대한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없음

- 사업화자금대출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부분담보·보증포함)을 지원
-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 대출상품 및 신규 대출상품을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
- 사업화자금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동력펀드,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펀드 등)
 - 펀드운용사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최종 투자를 지원

유의사항

- 사업화자금 대출의 경우,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 결정

추진절차



* (기술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외환, 우리, 전북,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http://www.tf.or.kr>)에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문의처

www.tf.or.kr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02)6009-4302
- 기술평가기관 : 평가방법, 평가절차, 일정협의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상담센터 (032)830-5715~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 (02)3299-602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3459-2880



금융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2.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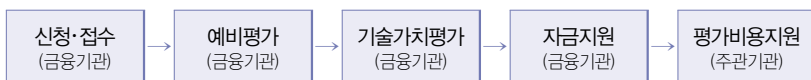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평가수수료 보조지원 : 건당 500만원 한도(업체부담금 20만원)
- 사업화자금 보증(기술보증기금) :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10억원 한도

✓ 추진절차



*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취급점 :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 기술평가센터
 - 보증 상대처 : 금융기관



문의처

www.kipa.org, www.kibo.or.kr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42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830-5716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69



금융지원

관련부처
기타



지원대상
중소기업



3-3. R&D평가등급 특례보증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을 지원

✓ 보증대상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 R&D평가표에서 ‘B등급 이상’ 및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 (사업화단계) 최근 3년 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기업

✓ 보증운용

- 보증내용
 - (개발단계) 기술개발(R&D) 중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
 - (사업화준비단계)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 보증조건
 - 개발단계, 사업화준비단계 : 95% 부분보증
 - 사업화 단계 : 90% 부분보증(협약은행의 경우)
- 보증료 : 0.5% ~ 3.0%(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취급하는 사업화자금의 경우 금리 및 대출취급조건 우대
 - 협약은행 : 기업, 국민,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금리우대 :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5%p~1.8%p 감면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필요서류 제출

문의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Part 3

출연지원

- 1 미래창조과학부
- 2 산업통상자원부
- 3 중소기업청
- 4 기타





출연지원 개요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I 관련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출연지원 : 국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
- 자유공모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응모하는 과제
- 계속과제 :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 투자연계형과제 :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과제
- 실시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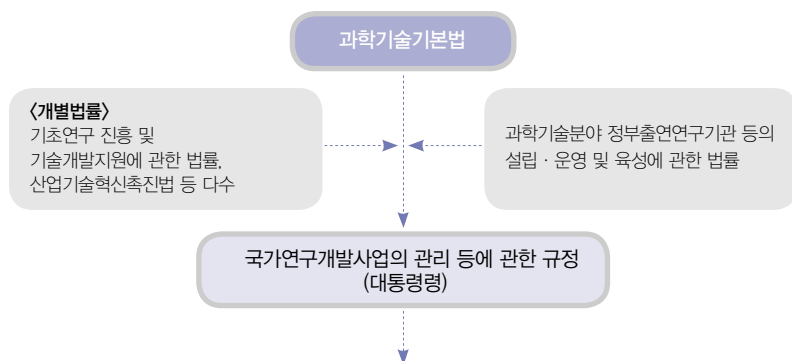
2 관련기관

- 전문기관(전담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 위탁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II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체계



[부처별 훈령·예규(예시)]

구분	관리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Ⅲ 부처별 전담기관

부처명	전담기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kca.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www.koril-rdf.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www.kisti.re.kr)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www.kofst.or.kr) 산업기술연구회(www.istk.re.kr)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org)
중소기업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한국산학연합회(www.sanhak.net)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기상청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산림청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forest.go.kr)

Ⅳ 공통사항

1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채무 불이행자 등

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 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이동 음식점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점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5909	한식 음식점점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111	중식 음식점점		56219	기타 주점업
	56112	일식 음식점점		56191	제과점업
	56113	서양식 음식점점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56114	기관구내식당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6120	기타 외국식 음식점점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6119	출장 음식 서비스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613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점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92	치킨 전문점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93	분식 및 김밥 전문점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94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6912	가정용세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91249	기타캠블링 및 베틱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96112	두발미용업		96991	예식장업
	96113	피부미용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119	기타미용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121	욕탕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96122	마사지업			

V 유의사항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고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및 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선진연구 인프라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대학, 출연(연)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지원내용

세부 사업		총 사업기간 [단계연구기간]	13년 연구기간	13년 사업비 (억원)
차세대 응용 오믹스	Metabotyping 기반 대사증후군 예측/제어 원천기술 개발	2013 ~ 2017 (5년) [2013 ~ 2015, 3년]	2013. 9 ~ 2014. 8	9억원 내외
	차세대 혈관/림프관 제어 기반 질환치료 원천기술 개발			10억원 내외
시스템· 인포메틱스	심혈관질환 분자시스템생물학 연구			9억원 내외
면역기전제어기술 개발	표적지향성 항암 복합 면역세포 치료 원천기술 개발			12억원 내외
생명연구 자원확보·관리 및 활용	자연사 참조표본의 확보 및 활용 지원 기반기술개발	2013 ~ 2022 (10년) [2013 ~ 2015, 3년]		3억원 내외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

*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탈락이 가능함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9(목) ~ 6. 8(토)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개발 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승인

문의처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단 (042)869-7768, 7767, 7762
미래창조과학부 미래기술과 (02)2110-2392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2. 나노융합2020사업

나노기술 분야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시장·신산업을 조기 창출하고 나노융합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상용화 촉진 플랫폼 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공공부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서의 사업 수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제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 상용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 *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만 지원가능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

✓ 지원내용

• 세부내용

구분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지원내용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 (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용화 R&BD 추진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현안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매칭 또는 자문 지원
지원예산	총 77.4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시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전문가 자문 : 기업의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비수준으로 하며 한정하지 않음 - 솔루션 제공 :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기획비용 및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설비 일부지원
지원기간	3년 이내	- 전문가 자문 : 3개월 이내 - 솔루션 제공: 1년 이내

• 지원대상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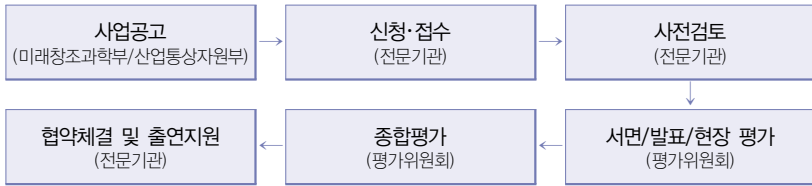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 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 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처리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공통기반 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기술료 징수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및 솔루션 제공(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 주관 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전문가 자문(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 기술료 비징수

✓ 추진절차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 전문가 자문은 3단계까지 지원/솔루션제공은 6단계까지 지원



* (전문기관) 나노융합2020사업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 2013. 4. 1(월) ~ 5. 1(수)
-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 2013. 7. 5(금) ~ 8. 6(화)

• 신청방법 :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http://www.nanotech2020.org>)에서 사업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문의처

www.nanotech2020.org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02)6000-7496, 7492, 749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5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02)2110-2412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3.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의 지원 하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융합기술을 발굴하여 단기간 내에 新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융합형 新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 분야의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융합기술 2개 유형, 17개 분야

구분	과학기술 + ICT 융합 (11개 분야)	과학기술 +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융합 (6개 분야)
지원분야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컨텐츠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생체인식 보안, 바이오 센서 에너지 수집·효율화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자동차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디지털컨버전스(융합) 공공문화 서비스

- 선정규모 : 2개 사업단(유형별 1개)
- 지원규모 : 사업단별 연간 12억원 내외
- 지원기간 : 2013. 10 ~ 2015. 9(2년)

* 과제 내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단별 적정 예산 배정 예정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6. 21(금) ~ 7. 31(수)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신청·접수

📄 문의처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기획팀 (042)869-7866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02)2110-2413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4.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을 둔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8억원
- 세부내용

지원 과제	사업비	지원기간	형태	주관기관
[총괄] 폐쇄망(Closed Network)용 고신뢰 네트워크 장비 기술 개발	0.5억원	16개월	지정공모	제한없음
[1세부] 폐쇄망 구축을 위한 고신뢰 게이트 웨이 핵심기술 개발	31.5억원			제한없음
[2세부] 폐쇄망용 전역적 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20억원			제한없음
[3세부] 폐쇄망용 고신뢰 WiFi 시스템 기술 개발	20억원			중소·중견
[4세부] SDN과 서비스 체인닝을 이용한 자가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16억원			중소·중견
[5세부] SDN기반의 침입대응을 위한 홈계이트웨어 개발	10억원			중소·중견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1(목) ~ 9. 2(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팀 (042)715-2294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1822

출연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지정공모 사업
 - 주관기관 : 해당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 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업 등
- 자유공모 사업
 - 주관기관
 - IT 융합기술 : 주력산업IT융합, 신사업IT융합, RFID/USN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이 가능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
 - 글로벌 ICT유망기술사업화 : 지원대상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창업(국내법인설립)을 완료한 창업(예정)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업 등

* 글로벌ICT유망기술사업화 경우 2차년도 부터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0억원

● 세부내용

세부 사업		지원 분야	지원 예산	사업비	지원기간
지정 공모	IT 유망산업 기술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등 미래 IT 유망산업분야 기술	29.6억원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최대 2년 이내
	IT 융합기술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술	51억원		
	지식 정보보안 상용화	IT융합 신산업 분야 지식정보보안 기업의 단기·상용화 기술	9.6억원		
자유 공모	IT 융합기술	IT기반 전통산업 및 서비스 산업 등 IT분야와 주력산업간 융합분야 기술	30억원	2억원/연간 이내	16개월 이내
	글로벌 ICT 유망기술 사업화	ICT분야의 기술로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특허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 등으로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술	20억원		최대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7. 12(금) ~ 8. 12(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 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T융합PD실 (042)715-2082

ICT기획평가팀 (042)715-2296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02)2110-2413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1-6.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방송통신 스마트 新산업·서비스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의 강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선점이 가능한 ICT응용서비스의 기반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분야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등
 - 주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 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억원
- 세부내용

과제	사업비	기간	형태
차세대이동통신 기반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술개발	과제당 최대 5억원	2년 이내	자유공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6. 1(토) ~ 6. 28(금)
- 신청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ca.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 문의처

www.kca.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기획부 (02)2142-1524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술과 (02)2110-2848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7. Giga KOREA 사업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환경구축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2억원
- 세부내용

기술분야	구분	사업비	기간	형태
네트워크	밀리미터파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40억원	과제특성에 따라 5~8년 이내	지정 공모
단말	디지털 홀로그래픽 테이블탑형 단말 기술 개발	37억원		
	실시간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초다시점 단말 기술 개발	30억원		
SW 플랫폼	Giga Media기반 Tele-experience 서비스 SW 플랫폼 기술 개발	35억원		
콘텐츠	기가급 대용량 양방향 실감 콘텐츠 기술개발	30억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단) Giga KOREA 사업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1(목) ~ 8. 31(토)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eit.re.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 문의처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CT기획평가팀 (042)715-2091, 229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모바일·전파PM실 (02)2142-153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술과 (02)2110-2841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8.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독자적 우주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략형 및 고부가가치형 우주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선진국의 수출허가 대상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수요대비 및 우주기술 자립화의 기틀마련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 우주핵심기술 분야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 우주기술 융복합 지원 분야 : 기업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우주기초연구 분야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 지원내용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기간	지원형태
우주핵심기술 분야	단기간(3년)내 개발이 가능하고 산업에 활용·파급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지원	10억원 이내	3년 (1+2년)	지정 공모
우주기술 융복합 지원 분야	우주기술을 활용하여 타 산업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 활동 지원	4억원 이내	2년	지정 공모
우주기초연구 분야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우주기술 기반 확대·강화 및 다양한 우주기술 수요에 대비한 미래형 우주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 지원	35억원 내외	5년 (3+2년)	자유 공모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우주핵심기술 분야 및 우주기술 융복합 지원 분야 : 2013. 7. 25(목) ~ 7. 30(화)
 - 우주기초연구 분야 : 2013. 5. 8(수) ~ 5. 21(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예비등록 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 * 반드시 예비등록을 마쳐야만 연구개발계획서 신청(파일업로드)이 가능함

↳ 문의처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거대과확단 (042)869-7805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정책과 (02)2110-2436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9.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안전확보 및 기술고도화를 통해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원자력 R&D역량강화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및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지원내용

- 세부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예산 (백만원)	
원자력 기술개발 사업	원자력원천 기술	선진 원자력기술 개발에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 기술과 원자력분야의 기술선점 효과가 큰 기반 기술 지원	12,504	신규· 계속
원자력 연구 기반 확충 사업	연구 시설 및 이용 기반 구축	연구시설· 장비구축 운영	7,000	계속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신규· 계속
	전략 기초 연구	전략기초	4,900	계속
		기초공동 연구소		
		원자력 선진기술 연구센터	5,980	신규· 계속

구분			지원 내용	지원예산 (백만원)	
인력 기반 확충	원자력 대학생 지원	원자력 공학 및 방사선(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연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공분야의 심화학습과 기초 연구개발 능력 배양	3,761	신규	
	원자력 미래 연구자육성	원자력 관련 우수 대학(원)생 및 젊은 연구원으로 구성된 그룹을 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 등에 파견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국제화를 도모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원)생들의 전공역량강화를 위해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실습 등 현장교육 실시 지원			
	전문가활용 프로그램	원자력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보존 및 대국민 수용성 제고			
	전문인력양성	원자력계 종사자의 역량향상 및 교육훈련 수행 체계 구축 운영			
소 계			34,145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17(수) ~ 5. 7(화), 10. 2(수) ~ 10. 31(목)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예비등록 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 반드시 예비등록을 마쳐야만 연구개발계획서 신청(파일업로드)이 가능함

↳ 문의처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원자력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042)869-7794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042)869-7753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02)2110-2454, 2455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0.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실감미디어산업의 조기 상용화 확산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억원
- 세부내용

기술분야	사업비	기간
에어플로팅스페이스(AFS)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개발	11억원/년	최대 4년 이내
배우의 움직임과 무대 자동화 기술을 연동한 인터랙티브 실감 공연 통합 서비스 시스템 개발	7억원/년	최대 3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대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9. 10(화) ~ 9. 24(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st.or.kr>)에서 인터넷전산 접수 후 방문 및 우편제출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02)6009-3782
 정보화전략팀 (02)6009-4374, 437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1823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억원 이내
- 세부내용

기술분야	내용	사업비	기간
암 치료 부담 증가	암 치료 효용성 제고를 위한 동반진단기술 개발	분야별 30억원 이내	1단계 : 1년 2단계 : 1 + 2년
청소년 비만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BI-IT융합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유해화학물질 유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조기대응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 키트 개발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9. 23(월) ~ 10. 22(화)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와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반드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www.nrf.re.kr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042)869-7774, 7771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 (02)2110-2382

출연자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2.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특구 R&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 내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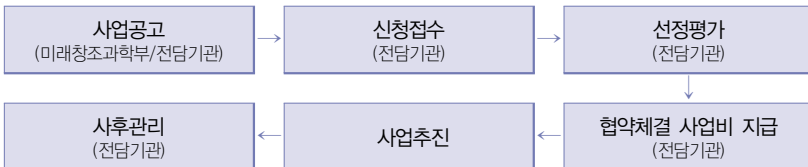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연구소 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산학연 주체 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자금 및 사업화 활동 지원
- 지원규모 : 617억원
 - 대덕특구 347억원, 광주·대구·부산특구 270억원
 - 세부사업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

✓ 추진결과



* (전담기관)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사업공고
- 신청방법 : 특구별 세부 사업공고 참조

문의처

www.innopolis.or.kr / www.dit.or.kr

대덕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센터 (042)865-8871
 광주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센터 (062)576-9301
 대구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센터 (053)592-8356
 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센터 (051)329-5415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 (02)2110-2764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1.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구소 보유기업
 -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13년 2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 해당 업종

- 제조업 중 식품·음료·담배 제조업 제외
- 제조업 이외 업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포함

-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 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 가능성이 있는 기업
- ③ 최근 또는 최근 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2012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이거나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청자격 없음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제조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4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	

* 지식서비스업 분야 및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 참여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이 참여 가능
- 지원제외
 -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주관기관이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되었거나,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87.6억원(신규 169.6억원)
- 지원내용
 - 최대 5년까지, 총 개발비의 50% 이내로 연간 5억원까지 지원
 - 1단계(2년) 및 2단계(3년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 융합ATC사업은 5억~10억원 이내
 -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 산정 가능(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TIP • 기술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채용 및 연구장비 구입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상한 제한없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채용조건부 R&D지원

- 주관기간은 1차년도에 3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한 연구인력도 인정
 - 의무채용인원은 1, 2차년도 정부출연금 3억원당 1명 기준(10억/3명)으로 책정
- 신규 연구인력을 고용하였으나,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단계(2차년도) 평가 시점에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을 환수
 - 신규고용인력이 퇴직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신규고용하면 인정
 - 주관기관은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을 필히 사업비에 책정하여야 함
- 신규고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규인력의 인건비 전액 환수를 비롯해 차년도 지원금액의 감액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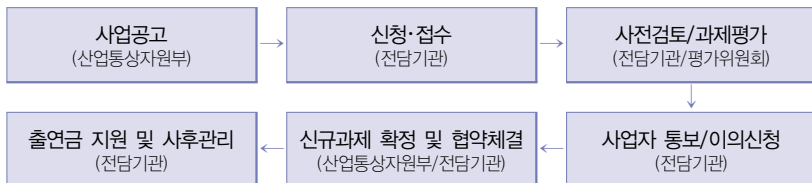
■ 융합 ATC 사업 별도 추진

- 국내 異種기술·산업간 융합기술 협력 연구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융합ATC사업’분야 별도추진
- 융합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1개 이상의 기업 추가 참여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9(화) ~ 4. 30(화)
* 융합ATC사업의 경우에는 10일 추가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문의처

www.keit.re.kr

R&D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4, 7385, 738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2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2. 산업융합촉진사업

중소·중견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R&D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 기업이 주관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 대기업은 참여기관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75억원(신규)
- 세부내용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기간
다기능 융복합 고압수소용기 제어밸브 및 인증기술 개발	3,6억원 이내	최대 2년
결정질 태양전지 융합형 지붕재 및 적합성 인증기술개발	3,6억원 이내	
스마트 하퇴의지시스템 및 적합성 인증 기술개발	4,1억원 이내	최대 3년
세포 임피던스 측정시스템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	3,6억원 이내	최대 2년
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모(helmet) 및 인증기술 개발	3,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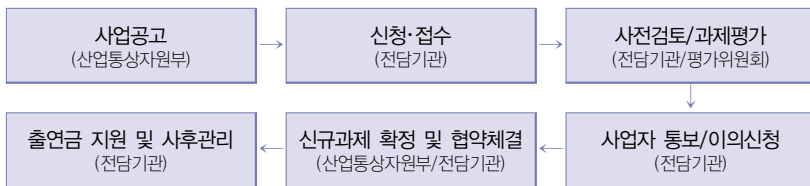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15(월) ~ 5. 14(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기술평가팀 (02)6000-7364, 736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2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3.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2.5억원(신산업 39.5억원, 주력산업 63억원)
-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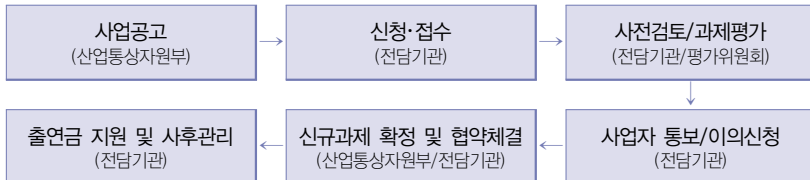
구분	산업	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신산업 융합 원천 기술	산업 융합 기술	나노 융합	[총괄] 임상진입을 위한 1nM 이하의 타겟 선택성을 가진 정밀 종양진단 및 15mm 이상의 영상심도를 보유한 치료자침용 생체안전 질병특이나노조영소재 개발	중소· 중견기업
			[1세부] 1nM 이하의 타겟 선택성을 가진 정밀 종양진단용 생체안전 질병 특이 자기공명영상 나노조영소재 개발	
			[2세부] 15 mm 이상의 영상심도를 보유한 중앙수술 유도용 생체안전 질병 특이 근적외선 나노조영소재 개발	
	로봇	차세대 로봇	고난이도 작업 수행을 위한 관절 각속도 160deg/s 이상, 반복오차 0.3deg 이하, 응답속도 50msec 이하의 한계어 기반 유압 구동 로봇 제어 기술 개발	비영리 기관
주력 산업 원천 기술	수송 시스템	그린카	1리터카를 위한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원천기술 개발	대학· 연구기관
	산업 소재	화학 공정 소재	도시기반 신발생산라인을 위한 One-face 접착제 및 무재봉 Upper 제조 가공기술 개발	제한없음
			도시기반 신발생산라인을 위한 다이렉트몰딩 신발 Sole 제조기술 개발	
			비닐계 올리고머 기반 유동성 개선제 제조공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중소· 중견기업
			자유공모	
		세라믹	레이저트루브 및 열교환기용 에너지전달 Meter급 Cylinder형 정밀세라믹 원천기술 개발	제한없음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기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9. 2(월) ~ 9. 12(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2)6009-821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21



출연자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신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 신산업기술개발분야 순수 자유공모의 주관기관은 중견기업만 해당되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
- 참여기관 : 개인(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 섬유생활스트림 분야(섬유산업고도화분야제외)는 아래조건의 스트림간 컨소시엄을 구성
 -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35.59억원(신규)
- 지원분야
 - 품목지정 분야 : 총 44개 품목, 231.9억원
 - 순수 자유공모(품목미지정) 분야 : 103.69억원
- 최대 3년 이내, 총 개발비의 75% 내에서 연간 2~10억원 내외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분야

●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섬유패션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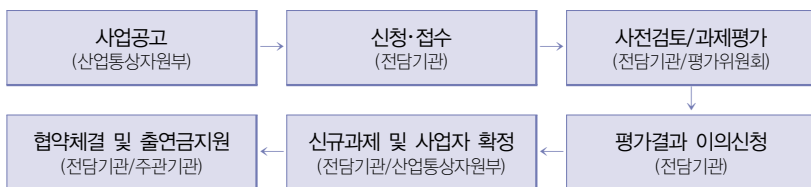
** 성숙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자·레저상품 등

- 해양레저장비 :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추세에 대응하여 해양레저장비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육성
- 개인용이동수단 : 고부가가치 개인용이동수단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자원을 통한 창의적 이동수단 생산기반 육성 및新概念 비즈니스모델 개발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 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사업기술개발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18(월) ~ 4. 3(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2)6000-8212~9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4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 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과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 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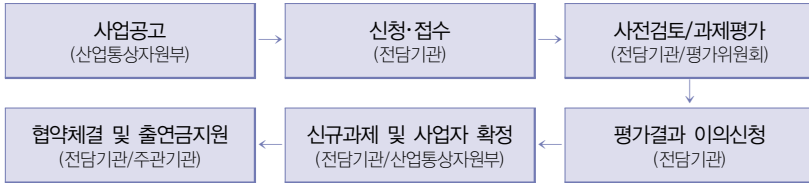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디자인전문기업을 제외한 개발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실시기업(영리기관) 1개사 이상을 의무적 포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1.47억원(지정공모 84억원, 자유공모 17.47억원)
- 지원내용
 - 지정공모(30개 과제) : 최대 1년 이내, 총 개발비의 75% 내에서 4억원 이내 지원
 - 자유공모 : 최대 1년 이내, 총 개발비의 75% 내에서 2억 이내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22(월) ~ 5. 14(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91, 7387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02)2110-510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6.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산업활용도,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9억원(신규 19억원, 계속 30억원)
- 지원분야
 - 품목지정(4개 품목 중 2개 선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Thermal Analysis, 초고속수명시험기, 네트워크분석기
 - 순수 자유공모(1~2개 선정) : 품목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장비 경쟁력 향상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 최대 5년 이내, 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10억원 내외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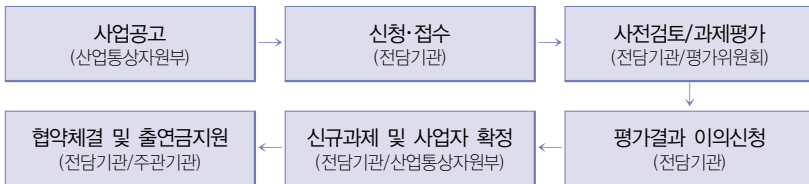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7. 16(화) ~ 8. 21(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우편접수

↳ 문의처

www.keit.re.kr

R&D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51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7.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갖춘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400개 이상 육성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다양성과 혁신성이 넘치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2012년 결산 기준 직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인 전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
 - 중소기업청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기업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 ‘10~’12 평균 직수출 증가율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2년 직수출액	직수출증가율
2천만불 ~ 5천만불	연평균 10% 이상
5천만불 ~ 7천만불	연평균 5% 이상
7천만불 ~ 1억불	제한 없음

$$^{10} \sim ^{12} \text{년 연평균 직수출증가율} = (2012\text{년도 직수출액} / 2010\text{년도 직수출액})^{(1/2)} - 1$$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보유기업(자체 증빙서류 제출)

✓ 지원내용

- 4대 플랫폼 :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플랫폼’적 성격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후보기업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공통 제공

세부사업	지원내용
자문플랫폼	글로벌 로펌·컨설팅펌·탈렌트펌 등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금융플랫폼	저리융자,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 파생금융 등 기업금융 전 분야를 종합 지원 * 기존 상품보다 100bp 이상 저렴한 전용 대출상품 출시 ** 후보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발행 등
인력플랫폼	우수인재의 후보기업 유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장기재직을 유도
마케팅플랫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구축*, 판로개척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인력 채용 등을 지원

- **맞춤형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지원시책을 PM 활동을 통해 도출된 기업의 선호와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지원시책
기술	• R&D 집약도 3% 이상인 후보기업 중 산업부 국제공동 R&D 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 R&D 집약도 3% 이상인 후보기업 중 산업부 R&D 성공이력 2회 이상 기업은 R&D 평가 과정에서 우대 • Intellectual Discovery社의 지적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기업 전용 데스크 개설 • 특허청 IP 스타기업 프로그램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글로벌 표준지원센터를 통해 후보기업 표준제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때까지 1:1 표준전문가 전담 서비스 지원
무역투자	• 장·차관 등 정부 고위급 해외순방시 후보기업을 정부대표단에 우선 추천 • 보잉·GE 등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참여기회를 후보기업에게 우선 배정 • 후보기업의 중국시장 전략을 한중 FTA에 반영하기 위한 한중 FTA 자문그룹 구성 • 해외 M&A 매물발굴을 위해 KOTR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제공 지원
금융	• 정책금융기관들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게도 일괄약식 심사를 통해 지원 * 프로그램 : 무역보험공사(Trade Champs Club), 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한국 정책금융공사(KOFC Frontier Champ), 산업은행(KDB Global Star), 신용보증기금(신보 스타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예비 스타 벤처기업)
인력	•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탐방기업 선정시 우대 • 마이스터 고교 대상 후보기업 공동 설명회 개최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지원시 우대 가점 부여 • R&D 집약도 3% 이상인 후보기업에게 산학협력 선도기술사업 지원자점 부여

* (주의) 상기 제시된 맞춤형 지원시책은 예산사정 등 정책여건변화에 따라 추가·변경·제외 가능

- **기업별 PM** : 후보기업별 공동 PM을 매칭하고,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선별하여 맞춤형 밀착 지원
- **이력관리** :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 대한 글로벌화 실태조사·정밀진단을 위한 기업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장지원
- **멘토연계** : 수출 1억불 달성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후보기업과 성공·실패 공유, 해외시장 공동 진출 추진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7. 8(월) ~ 7. 31(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 (02)6009-3981, 3912, 3988
 정보운영팀 (02)6009-3115, 3116, 4275, 3971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02)2110-3979



출연자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8.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및 유럽기술협력사업 추진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유형		신청자격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R&D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학·연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 참여기관 : 해외 1개 이상 연구기관(산·학·연)
유럽기술 협력	EUREKA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학·연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레카 정회원 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과 공동연구 컨소시엄의 국내기관) • 참여기관 : 유레카 정회원국(1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
	EU FP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학·연 주관일 경우 기업참여 필수) (유럽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 완료 과제의 국내기관) • 해외 참여기관 : EU FP 회원국(3개국 이상)의 연구기관(산·학·연)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60.34억원(신규 157.12억원)
- 세부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로 국내 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공동R&D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네트워크, R&D기획 등을 수행하는 과제 지원
	국제공동 R&D	국내 산학연 국제공동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국제기술협력 전략 및 국제기술협력의 시급성,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유럽기술 협력	EUREKA	국내기업이 유럽 다자간 네트워크인 EUREK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유럽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제 지원
	EU FP	유레카 EU FP(Framework Program)에 참가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 기관에게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지원조건

지원유형		사업비	지원기간	비고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연 2억원 ~ 5억원 이내	최대 1년 이내	당해연도에 타당성과제 수행 후, 차년도에 R&D과제로 평가
	국제공동 R&D	연 10억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형과제 위주로 지원
유럽기술 협력사업	EUREKA, EU FP	연 5억원 이내	최대 3년 이내	유럽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및 공식승인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기술료 징수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 R&D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영리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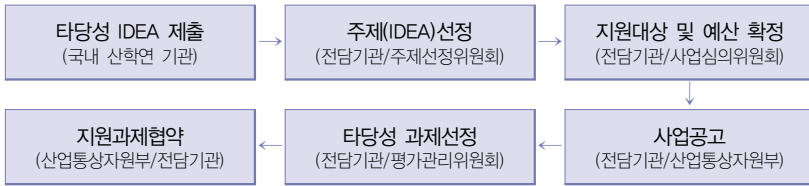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내용, 기술료 금액·납부방법 등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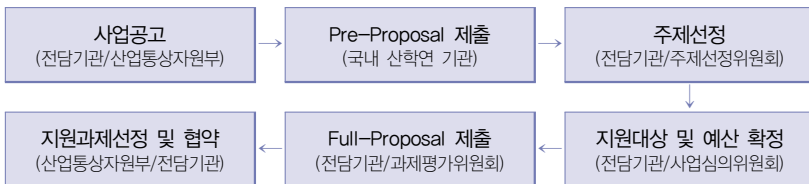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제공동R&D, EUREKA, EU FP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30(화)까지(유럽 기술협력 2차는 8.30(금)까지)
- 신청방법
 - ‘창의혁신형 타당성 과제 IDEA’ 및 ‘Pre-Proposal’(사전사업계획서)은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EUREKA, EU FP 사업은 이메일 접수가능(사업담당자와 협의필수)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총괄 (02)6009-3181, 3205
 - 미주 (02)6009-3206, 아시아 (02)6009-3941, 유럽 (02)6009-318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66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9.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연구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총 개발비의 최대 50% 자금지원

지원유형	총 사업비 (양국지원금액 합계)	지원기간	과제내용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US \$ 1,000,000	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US \$ 100,000	1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 연구개발과제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US \$ 30,000	3개월 이내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 과제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 기술료 징수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대상액의 최대 50% 감면혜택이 부여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1. 2(수) ~ 1. 31(목)
 - 2차 : 2013. 7. 9(화) ~ 8. 8(목)
- 신청방법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il-rdf.or.kr>)에서 내용 및 양식 참고, 양국 사무소 담당자
에게 이메일 신청

문의처

www.koril-rdf.or.kr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한국사무소 (02)6009-8253
 이스라엘사무소 +972-3-511-818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661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10.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법인 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70억원(신규 25억원)
- 품목지원 분야 : 슈퍼섬유 화물 이송체, 슈퍼섬유 보강 케이블, 슈퍼섬유 분산 마스터 배치, 슈퍼섬유 회로기판소재, 슈퍼섬유 전자기기 하우징, 슈퍼섬유 인체보호구, 슈퍼섬유 건식 여재, 슈퍼섬유 건축·토목용 보강재
- 최대 2년 이내, 과제당 5억원 내외/년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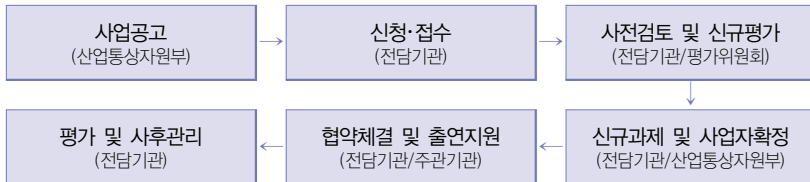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16(화) ~ 5. 16(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94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02)2110-4907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개선하여 항공우주분야 신산업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주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6억원(신규)
- 세부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예산	지원기간
상용기술개발 (중장기/단기)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 기기류 및 관련 소재류 개발	24억원 내외	(중장기) 최대 5년 (단 기) 최대 3년
원천핵심기술개발 (정책지정)	회전익 항공기 익형설계기술 개발	2억원 내외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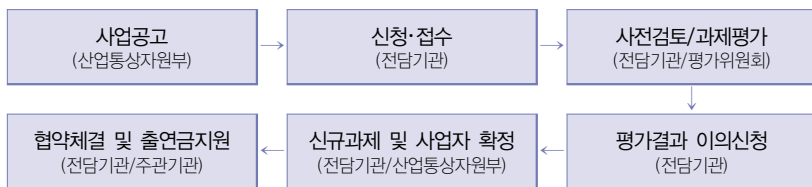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1(목) ~ 8. 22(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 (02)6001-0778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2)2110-4825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가 에너지 공급 및 자립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교유가 등과 같은 에너지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15억원(신규)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비	개발기간	주관기관
전략 응용기술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지원	연간 10~30억원 내외	3년~5년	산·학·연
대형 상용화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최대 3년	산업계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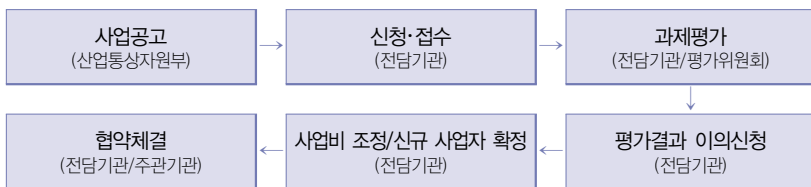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25(월) ~ 4. 18(목)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지원팀 (02)3469-8443~9
 전력원자력팀 (02)3469-8443, 8481~5, 8487, 8488, 8478
 신재생에너지팀 (02)3469-8463, 8467~9, 8471~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02)2110-5694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3.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핵심부품, 소재개발과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제조기술 개발을 접목하여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5억원(신규)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비	개발기간	주관기관
핵심소재	산·학·연 공동연계를 통해 안전성·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에 연결되는 핵심소재 개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3~4년 이내	기업
이차전지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개발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20(월) ~ 5. 30(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042)715-2233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과 (02)2110-5675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억원(신규)
- 세부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예산	개발기간	사업비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 장비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바이오, 의료, 방송 장비	65억원 내외	최대 3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
공통핵심 기술개발	• 복수 분야 장비에 활용 가능하며,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축적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2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하며 이 경우 징수액의 9%는 전담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제외)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26(월) ~ 9. 6(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항공평가팀 (02)6001-0783, 0792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02)2110-4577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15.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시장선도형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 지원내용

1. 전략적 핵심소재

- 지원분야 :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 지원규모 : 200억원 내외
- 지원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기술개발단계부터 수요기업 참여를 의무화

2. SW융합형 부품

- 지원분야 : 자동차·조선, 기계, 전기전자 부품과 SW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
- 지원규모 : 150억원 내외
- 지원방향 : 중소·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R&D 전주기에 신뢰성 검증 및 수요기업 참여 의무화

✓ 공통사항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대기업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2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2/3 이상	사업비 75.0% 이하	민간부담금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사업비 50.0% 이하	민간부담금 20% 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정부출연금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실시기업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가능하며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14(월) ~ 9. 26(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http://itech.keit.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eit.re.kr

R&D 상담클러스터 1544-663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1팀 (02)6009-8392~6

소재부품평가2팀 (02)6009-8371, 8373, 837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2)2110-5508



출연자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16.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기업의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최근 3년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7억원
 - 과제당 6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세부내용 :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수행, R&D 연계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기업주도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지원(자유공모)
 - 기업의 중장기 R&D 전략과 연계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과제를 대학과 공동으로 기획추진
 -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R&D 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현장실습 프로그램 : 수행과제 참여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 캡스톤디자인 : 수행과제와 연계한 소규모 과제를 참여대학의 캡스톤디자인 과제로 추진
 - 재직자교육 : 대학과 공동으로 기업체 임직원의 R&D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학협력협의회 또는 기술교류회 등 산학네트워크 운영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18(월) ~ 3. 25(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02)6009-3262, 326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3264



출연자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7.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제(R&D) :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대학, 연구소, TP,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 비R&D과제 :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 해당 광역경제권역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60억원 내외
 - * 프로젝트별 지원규모(과제별 지원액 및 지원과제수)는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 지원기간 : 23개월 이내(당해년도 사업기간 : 2013. 6 ~ 2014. 4)
- 지원분야(40개 프로젝트)

권역	프로젝트
충청	차세대의료, 이차전지, 태양광(부품),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신호처리융합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호남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대경	태양광(장비),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 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 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권역	프로젝트
동남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 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강원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 테인먼트
제주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세부내용

- 기술개발과제(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 창출형 R&D, 채용 조건부 R&D)

- 2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대·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우선) 공동 컨소시엄 우대

* 유망품목: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사업공고 참조)

구분	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지원조건	과제별 연평균 국비 지원액 대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 총 사업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채용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원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 1차년도 협약 후 1차년도 종료시(14. 4. 30) 까지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채용인력은 과제 참여 필수
채용주체	과제 참여 기업 전체	과제 참여기업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채용분야	연구직, 생산(관리)직	연구직
채용대상	전문학사 이상	석·박사 과정 이상
지원기간	2년 이내(사업기간 이내)	
특례사항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 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비R&D과제(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상품·서비스에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유·무형의 상품·서비스 개발

- 2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매출 및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강원권 헬스테인먼트 및 제주권 휴양형 MICE 프로젝트에 해당

• 기술료 징수

- 비 R&D과제 : 기술료 비징수
- 기술개발과제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단)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지원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22(월) ~ 4. 26(금)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http://www.ritis.or.kr>)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02)6009-4374, 4379

해당 지역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권역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권	충청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cclio.leading.or.kr)	(042)934-8371, 6196, 8378, 837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01호
호남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honam.leading.or.kr)	(062)602-7164, 7156, 7169, 716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길 107 광주테크노파크 4층
대경권	대경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dglio.leading.or.kr)	(053)818-9507, 9513, 9515, 9517, 9518, 9548, 9543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27 경북TP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동남권	동남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dllo.leading.or.kr)	(051)629-7693, 7592, 7597, 7582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한미리관 4층
강원권	강원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gw.leading.or.kr)	(033)248-5684, 568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946번지(신북로 61-10번지)
제주권	제주지역사업평가원 광역사업평가단 (http://jeju.leading.or.kr)	(064)759-7422, 7427, 7423, 74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2)2110-5603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8.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광역권 내 또는 광역권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 촉진을 지원

✓ 지원대상

-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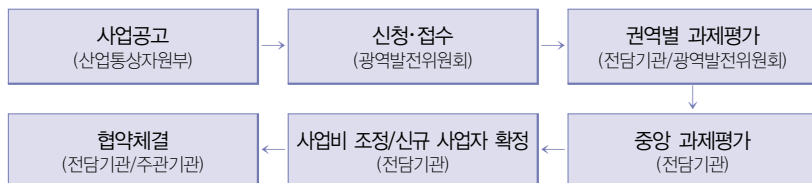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세부내용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기간	지원형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분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최대 2년 이내	자유공모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징수
 -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체결시 정액기술료방식과 경상기술료(매출액의 1.25~5%)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발전위원회) 해당 권역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7. 9(화) ~ 7. 15(월)
- 신청방법 : 해당 권역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02)6009-3764

지역별 세부사업 안내 및 문의처

기관명	문의전화/01메일	주 소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crdc.go.kr)	(02)2133-4769 esgood@korea.kr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2층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ccrdc.go.kr)	(043)218-9531 goam@korea.kr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라1길 오창벤처프라자 6층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hnrdc.go.kr)	(063)230-7324 ryubrain@korea.kr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drdc.go.kr)	(053)803-6492 gu-yah@hanmail.ne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95번지 대구테크노파크 12층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dongnam.go.kr)	(051)508-9693 ijkang97@hanmail.net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669 부산지방공단스표원 내
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grdc.go.kr)	(033)249-2282 thmink@korea.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jejurdc.go.kr)	(064)710-2587 endorphiny@korea.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2)2110-5596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9.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확약을 받은 기관
- 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반조성사업 :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
- 기술개발사업 : 전국단위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 8개 세부과제로 구성
 1. 탄소밸리구축사업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272.2억원 (신규 46.2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 지원규모 : 106.5억원(신규 10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3.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88.14억원(신규 11.5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4.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0억원(신규 19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4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5.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95.6억원(신규 15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6.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 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 허브를 구축하여 국가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40억원(신규8.28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7.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특화단지 조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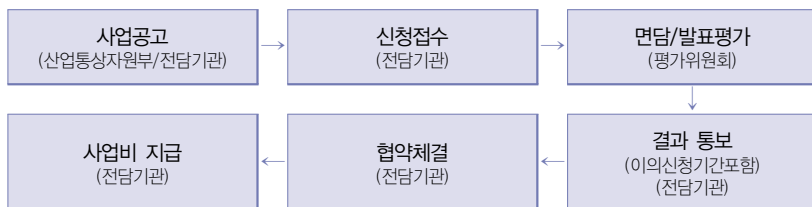
- 친환경·고효율의 글로벌 리더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5억원(신규15억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8.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 센서 등)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82억원(신규)
- 지원내용 : 지원기간 3년 이내 과제별 차등적 자금지원
- 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을 실시하며, 사업비도 연차별 지급
- 기술료 징수
 - 기반조성 : 기술료 비징수
 - 기술개발 : 주관기관은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경우, 정액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 방식과 경상기술료(착수기본료의 5~10% 또는 매출액의 1.25~5%)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31(금) ~ 7. 2(화)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http://www.ritis.or.kr>)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02)6009-3781
전산팀 (02)6009-4374, 4379

세부 사업명	연락처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사업화 기반구축	(02)6009-3784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	(02)6009-3786
탄소밸리구축	(02)6009-3786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 및 연구기반구축	(02)6009-3788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02)6009-3788
감성터치플랫개발	(02)6009-3783
로봇산업클러스터	(02)6009-3783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02)6009-378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2)2110-5596



출연자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20.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기술개발(R&D)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해당지역 및 타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기업(창업 1년 이상),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지원(비R&D)
 -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500억원
- 세부내용

지원유형	지원 분야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 출연금
기술개발 (R&D)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560 억원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최대 3년 이내	총 연구비의 50~75%
기업지원 (비R&D)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 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940 억원			

● 지원분야(자유공모)

권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술료 징수 :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 10~40%)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30(화) ~ 5. 29(수)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http://www.ritis.or.kr>)에 접속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해당 지역산업평가단 방문제출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2, 3733, 3731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지역사업 평가원	대전지역산업 평가단	(042)930-4403, 4405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림동 694번지 지능형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충남지역산업 평가단	(041)589-0111, 0131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호남지역사업 평가원	충북지역산업 평가단	(043)270-2711, 271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창리 685-1번지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산업평가단(363-883)
	광주지역산업 평가단	(062)602-7410, 74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전남지역산업 평가단	(061)286-4387,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대경지역사업 평가원	전북지역산업 평가단	(063)219-2214, 22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산업평가단(561-844)
	대구지역산업 평가단	(053)757-3716, 373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7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1-020)
	경북지역산업 평가단	(053)818-9563, 9564, 9565	경북 경산시 상평동 300번지 본부동 4층 410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동남지역사업 평가원	부산지역산업 평가단	(051)315-9261~ 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곡로 70-16번지 1층 112호 부산지역산업평가단(617-829)
	울산지역산업 평가단	(052)219-8574, 8623	울산광역시 중구 다천로 385번지 기술혁신A동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경남지역산업 평가단	(055)259-3401, 34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강원지역사업 평가원	강원지역산업 평가단	(033)248-5632, 563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술혁신지원센터 3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821)
제주지역사업 평가원	제주지역산업 평가단	(064)759-7322, 7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4 스마트 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2)2110-560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21.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 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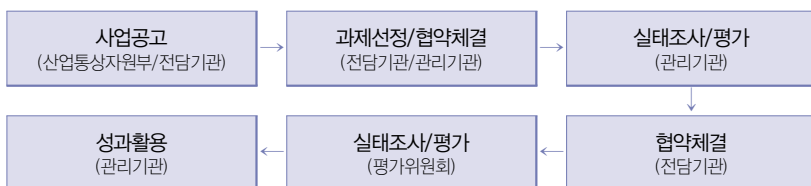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역내 연고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내외부 기관과의 컨소시엄구성 등 기업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 기관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8억원
- 세부내용 :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자원 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산업분야(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은 제외)
- 사업단 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최대 3년 이내, 과제 당 5억 내외 지원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산업평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30(화) ~ 5. 29(수)
- 신청방법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http://www.ritis.or.kr>)에 접수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해당 지역산업평가단 방문제출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85

해당 지역별 지역산업평가원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충청지역사업 평가원	대전지역산업 평가단	(042)930-4403, 4405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림동 694번지 지능형로봇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충남지역산업 평가단	(041)589-0111, 0131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호남지역사업 평가원	충북지역산업 평가단	(043)270-2711, 271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산업평가단(363-883)
	광주지역산업 평가단	(062)602-7410, 74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전남지역산업 평가단	(061)286-4387, 439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대경지역사업 평가원	전북지역산업 평가단	(063)219-2214, 2215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산업평가단(561-844)
	대구지역산업 평가단	(053)757-3716, 373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7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1-020)
	경북지역산업 평가단	(053)818-9563, 9564, 9565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본부동 4층 410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동남지역사업 평가원	부산지역산업 평가단	(051)315-9261~ 9264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번지 1층 112호 부산지역산업평가단(617-829)
	울산지역산업 평가단	(052)219-8574, 8623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385번지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경남지역산업 평가단	(055)259-3401, 3402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강원지역사업 평가원	강원지역산업 평가단	(033)248-5632, 563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술혁신지원센터 3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821)
제주지역사업 평가원	제주지역산업 평가단	(064)759-7322, 73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4 스마트 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2)2110-5594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3-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중소·중견기업
 -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00억원 이상
(단, 시스템SW 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10~'12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08~'12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2013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현재 ATC 사업 수행 중인 기업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사업 종료 이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신청 가능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질적 특성)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
 -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 (연간 15억원 내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확대	•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연 1.4억원 내외(기업 50% 부담) •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확보	•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 채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1인당 350만원 지원, 채용박람회 연계)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금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 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 한국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 기업은행-수출·기술 강소기업 – 산업은행-KDB Global Star •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설팅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KRX),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특허청), IP활용전략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등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 평가 결과 일부 기업은 기술 확보(R&D)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2. 25(월) ~ 3. 14(목)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02)6009-3913, 4353, 4355

정보기획팀 (02)6009-4375, 4376

중소기업청 혁신지원과 (042)481-6833



출연자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2.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육성(다음 2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전년도 직전수출 실적 3백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은 신청불가
 - 투자연계(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연구소 보유기업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사항
 -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불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 (관련페이지)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6억원

● 세부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예산	총 사업비	지원 기간	정부출연금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지정공모)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 품목 발굴·지원	175억원	10억원 (연간5억)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0% 이내
투자연계 (지정공모)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131억원	5억원 이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추진절차

●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투자연계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2. 12(화) ~ 3. 8(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 www.keit.re.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내선 1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35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 투자협의회 (02)2156-2131~3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3.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첨단융합, 제조기반 기술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를 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4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연구소 보유기업
 -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 다만, 업력 1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과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유의사항 : 1차/2차 공고 중 선택하여 1회만 신청가능

* (관련페이지) 2013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48억원

지원분야	지원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지원방식
• 미래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 • 159개 전략품목	• 1차 : 500억원 • 2차 : 348억원	• 5억원 이내 •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자유공모

■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 : 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 첨단융합 : 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 제조기반 : 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추진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2. 6(수) ~ 2. 27(수)
 - 2차 : 2013. 6. 10(월) ~ 7. 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www.smtch.go.kr / www.keit.re.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내선 1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25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4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

3-4.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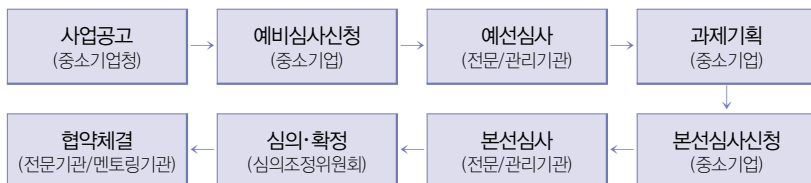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55억원
- 세부 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출연금
제품 서비스 (자유응모)	전 사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	105억원	2억원 이내,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식 서비스 (자유응모)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 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	50억원	1.5억원 이내, 1년 이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추진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멘토링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2. 14(목) ~ 3. 14(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신청·접수

문의처

www.smetech.go.kr / www.keit.re.kr

R&D 상담 콜센터 1661-1357(내선 1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30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5
 기술보증기금 (032)830-5714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1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5.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형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개방형 R&D 활성화 및 융·복합기술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
 -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의 업종 : p.74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지원
 - ① 융·복합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② 센터연계형과제
 - i) 일반기술유형
 - 주관기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공공 연구기관
 - ii) 농공상용융합형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55억원(신규 387억원, 계속 368억원)

● 세부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융·복합형 기술개발 (지정공모)	산연 협력과제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합지원 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첨단융합 기술개발 지원	173억원	• 6억원 이내 •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60% 이내
	이전 기술과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융·복합과 관련하여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 기술개발	59억원		
센터연계형과제 (자유공모)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융합기술개발	155억원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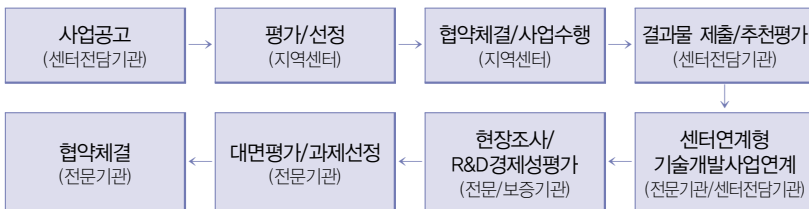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융·복합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 센터연계형과제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센터전담기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보증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센터) 대표기관, 참여기관 등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융·복합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 2013. 2. 27(수) ~ 3. 29(금)
 - 센터연계형과제 : 2013. 5. 15(수) ~ 6. 14(금)
- 신청방법
 - 융·복합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센터연계형과제 : 해당지역센터별 온라인 또는 우편, 인편으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 www.tipa.or.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24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2)769-6436, 6437
기술신용보증기금 (032)830-5719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0



출연자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토록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보장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19억원(신규 359억원, 계속 160억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과제	사업비 및 기간	정부출연금
수요조사 과제 (지정공모)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다수의 부품을 패키징화하여 제안한 과제	5억원 이내 2년 이내	- 민간 : 총 사업비의 55% 이내 - 공공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2.5억원 이내 (해회는 1.5억원)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추진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3. 12(화) ~ 4. 11(목)
 - 2차 : 2013. 5. 7(화) ~ 6. 5(수)
 - 3차 : 2013. 7. 24(수) ~ 8. 23(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www.smtech.go.kr / www.keit.re.kr

중소기업 R&D고객센터 1661-1357 (내선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2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49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4447



출연자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7.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해외 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과제	사업비 및 기간	정부출연금
글로벌 협력 (지정 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5억원 이내 •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50% 이내
기업 제안 (자유 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 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과제제안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고대상 과제로 선정	• 1.5억원 이내 • 1년 이내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 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자분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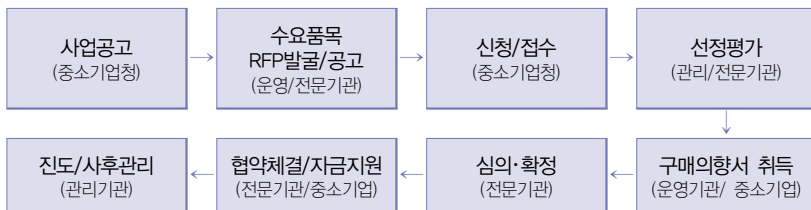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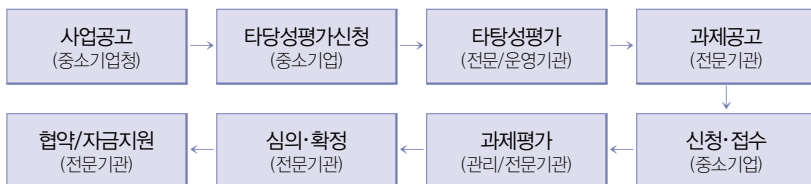
추진절차

- 글로벌협력과제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업제안과제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3. 18(월) ~ 4. 17(수)
- 2차 : 2013. 5. 7(화) ~ 5. 21(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tech.go.kr / www.keit.re.kr

중소기업 R&D고객센터 1661-1357 (내선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3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파트너링팀 (02)3460-7848, 7207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4447



출연자원

-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 지원대상
중소기업 ▼

3-8.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 펀드)을 미리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0억원(신규과제 445억원 내외, 계속과제 55억원 내외)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과제	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수요조사 (지정공모)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250억원	10억원 이내 3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미래전략 (컨소시엄)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50억원		
기업제안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145억원		

■ 협력펀드 참여 수요처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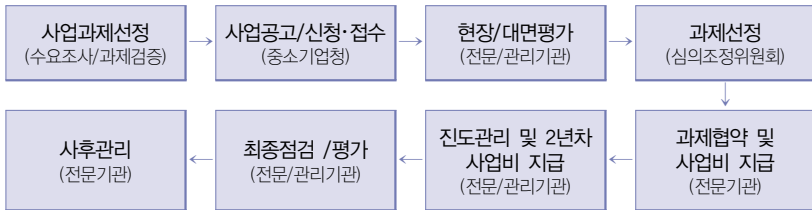
- 민간부문(11개) : 포스코, 인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주성엔지니어링, 다산네트웍스, 인성정보
- 공공부문(11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방부문(1개) :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 참여수요처는 협력펀드 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추진절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2013년 사업공지 이후 당해 연도 자금 소진시까지
* 단, 지원대상과제는 회차별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사업공고 확인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문의처

www.smtech.go.kr / www.tipa.or.kr

중소기업 R&D플래터 1661-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38-0219, 022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4447



출연자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기업
 -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창업 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투자연계멘토링 :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창업 5년 이내 기업
- 1인 창조기업 과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 *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은 사업공고 확인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13억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창업 과제	건강진단 연계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	1,047억원	• 2억원 이내 •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90%
	투자연계 멘토링	창업기업에 투자와 멘토링이 연계된 기술개발지원	70억원	• 2억원 이내 • 1년 이내	
1인 창조기업 과제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96억원	• 1억원 이내 • 1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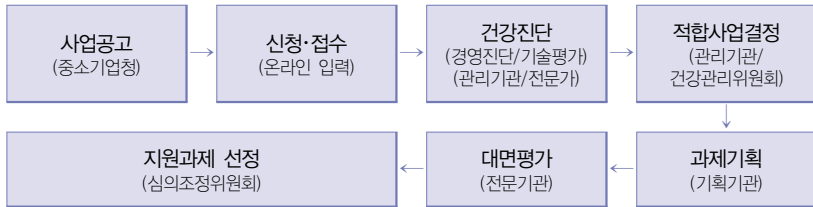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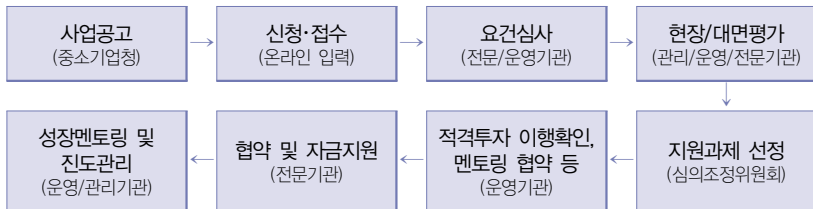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창업 과제(건강진단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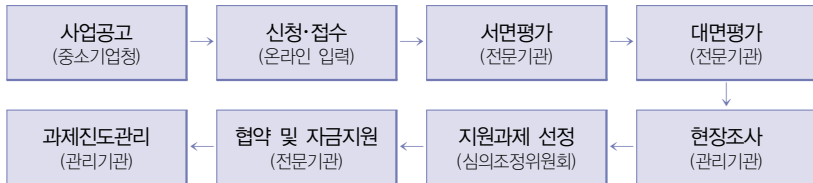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강관리위원회)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창업 과제(투자연계멘토링)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1인 창조기업 과제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 신청절차

- 신청시기
 - 창업 과제(건강진단연계) : 매월(1월~7월) 1~10일
 - 창업 과제(투자연계멘토링) : 2013. 3. 12(화) ~ 4. 30(화)
 - 1인 창조기업 과제 : 2013. 3. 27(수) ~ 5. 8(수)
- 신청방법
 - 창업 과제(건강진단연계) : 중소기업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 기관에 방문신청
 - 창업 과제(투자연계멘토링) 및 1인 창조기업 과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te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혹은 우편 접수

문의처

www.smetech.go.kr / www.tipa.or.kr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내선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2, 0217
한국벤처개발협회 투자지원팀 (02)2156-2134, 2135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지원대상
예비창업자

3-10.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선도벤처기업 보유인프라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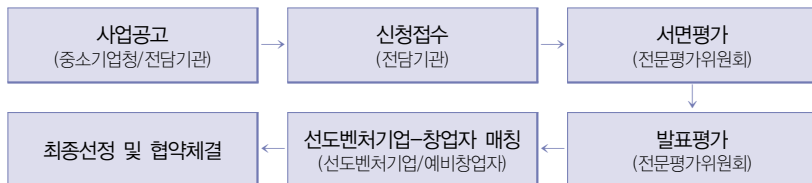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75억원 / 85개 창업팀 내외
 -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세부내용
 - 창업인프라 구축비 :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조성(임차료 등) 및 비품구입비 등
 - 정보활동비 :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멘토비, 기술경영자문비, 교육비, 학회참가비, 창업관련(기술,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참고문헌 등
 - 시제품제작비 : 창업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 공통경비 :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창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개최비용, 우수 (예비)창업자 해외연수 비용 등

✓ 추진절차



* (전담기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18(월) ~ 4. 4(목)
- 신청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startbiz.changupnet.go.kr/>)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changupnet.go.kr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02)890-0628, 0627, 6353
한국여성벤처협회 (02)2156-2166, 2168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042)480-4341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3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3-11. 창업맞춤형사업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의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내국인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외국인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신청일 현재 장기체류자격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연장가능하고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300억원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세부내용

구분	세부 구분	내용
창업 자금	시제품제작비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창업 프로그램	의무교육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20h 이상)
	특화 프로그램	투자유치,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 (20h 이상)
	멘토링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10h 이상)

* 최종 선정자는 창업프로그램(의무교육 및 멘토링) 필수 이수

✓ 추진절차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startbiz.changupnet.go.kr/>)에 접속하여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온라인 접수
사업 신청 기회는 연간 단 1회로, 이전공고에 신청하여 탈락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불가

문의처

www.kised.or.kr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팀 (042)480-4342~8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391, 8921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지원대상
중소기업

3-12.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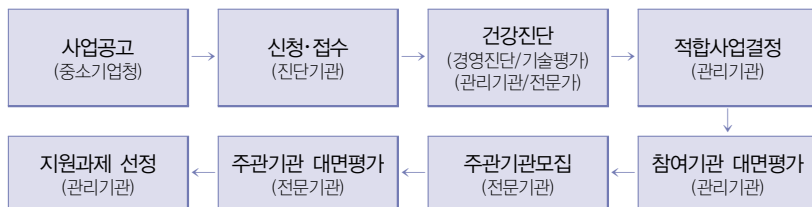
- 지원규모 : 1,334억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지원 예산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첫걸음 기술개발 (지자체 매칭)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390억원	•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도약 기술개발 (지자체 비매칭)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944억원	• 1년 이내	75% 이내

■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구분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미인정 기업 • 이공계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 • 그 외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미보유 기업

✓ 추진 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한국산학연합회
(진단기관) 지방중기청, 중진공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총 9회
- 신청방법 : 관할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 www.kaiari.or.kr

R&D 상담콜센터 1661-1357

한국산학연합회 사업지원본부 (042)720-3351, 3352, 3353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3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지원대상
중소기업

3-1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R&D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여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로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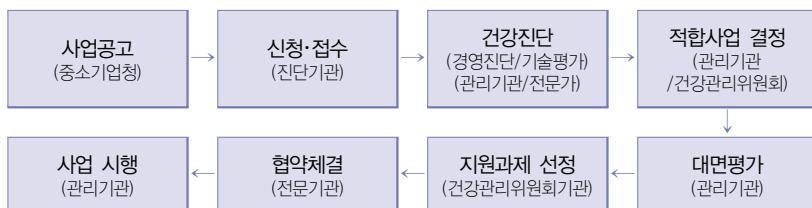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00억원(신규 290억원, 계속 110억원)
- 세부내용

세부사업	지원내용	사업비 및 기간	정부 출연금
뿌리산업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5천만원 이내 9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소상공인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 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제품·공정개선 지원		
기타 소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이외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 추진 절차



* (관리기관)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단기관) 지방중기청, 중진공지역본부, 신보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총 9회
- 신청방법 : 관할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 www.tipa.or.kr

R&D 상담콜센터 1661-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213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60

출연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협동조합

3-14.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기관의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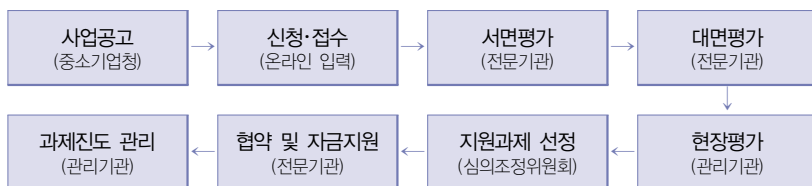
※ (관련페이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p.74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2억원
- 세부내용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 출연금
동종 및 유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 기술·제품·공정혁신 과제 지원	2억원 이내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 추진 절차



*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22(수) ~ 7. 11(목)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etch.go.k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 www.tipa.or.kr

R&D 콜센터 1661-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8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02)2124-3101, 3104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8



출연지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1.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개발연구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13년 예산
건설기술연구 (계속 8개, 신규 10개)	• (계속과제) 고성능·고효율 건설재료 및 스마트 설계·시공기술, 초장대교량 사업 등 우선지원 • (신규과제) 토사재해 회피기술,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량기술, 해저터널기술 3개 연구단 과제 등 신규 발굴·지원	36,413
물관리연구 (계속 6개, 신규 2개)	• (계속과제) 수변지하수 활용 고도화, Water Grid 지능화 등 우선지원 • (신규과제)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기술, 도시 하천 내배수 시스템 선진화 기술개발과제를 신규 발굴·지원	23,477
플랜트연구 (계속 1개, 신규 4개)	• (계속과제) 실증실험에 착수하는 LNG플랜트 연구 우선지원 • (신규과제) 미래 물·자원·에너지 부족에 대비하여 극한지역 자원이송망 설계 및 이송기술, 순환형 복합 플랜트 등 다양한 신규과제 발굴·지원	25,013
도시·건축연구 (계속 7개, 신규 7개)	• (계속과제) 도시재생사업단, 초고층빌딩 연구단 등 우선지원 • (신규과제) 주거복지, 녹색성장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도시·건축과 IT기술을 융합시키는 첨단기술 등 신규과제 발굴·지원	53,099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 (계속 13개, 신규 4개)	• (계속과제) 원천·모험연구, 기술사업화, 공공기반기술 분야 등 우선지원 • (신규과제) 2개 대형실험시설 등 장비시설 인프라 구축 과제와 기초원천 및 창조모험형 등 신규 발굴·지원	53,469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 (계속 4개, 신규 1개)	• (계속과제) 환경친화적 연안역 기술개발,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구조물 개발 등 우선지원	6,300

구분	사업내용	2013년 예산
	• (신규과제) 권역별 특성 및 기술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및 지역연구 인프라강화를 위한 지역거점센터를 신규 과제로 지원	
건설교통연구기획 (기획연구과제)	• (기획연구과제) 미래핵심 기술 및 사업 발굴·자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경쟁기획 등 실시	3,000
교통물류연구 (계속 9개, 신규 7개)	• (계속과제) 스마트하이웨이, 교통상황 예측기술 및 지능형 물류센터 상하역 이송 시스템 등 우선지원 • (신규과제) 중형자상버스 표준모델, 자동차 튜닝인증·평가기술, 경량화물용 스마트 물류장비기술 등 신규 발굴·지원	56,627
철도기술연구 (계속 11개, 신규 17개)	• (계속과제)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Test-Bed 지원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요처 연계, 신뢰성 검증 및 안정화 등 지원 • (신규과제) 차량·역사 승객편의 기술, 철도건설·운영 비용 저감을 위한 연구, 철도 부품 국산화 및 선로, 전력, 신호 등 인프라 기술, 대형 사업단 과제의 성과 상용화 및 기술유지발전을 위한 후속연구 등 지원	97,627
항공기술연구 (계속 7개, 신규 5개)	• (계속과제) 2·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 항공정비 및 항공사고예방기술 개발, 항공관제장비개발 등 추진 • (신규과제) 민간무인항공기 탐색개발, 항행감시 및 항공보안검색기술개발 등 과제추진	44,544
총계		399,569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4,019억원
 - 건설분야 : 8개 사업, 2,031억원
 - * 정책연구개발사업 23억원 포함
 - 교통분야 : 3개 사업, 1,988억원

✓ 신청방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에 신청

↳ 문의처

www.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31)389-6313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2



출연지원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2. 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해양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개발연구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13년 예산
미래해양자원이용 기술개발 (계속 5개)	• (계속과제) 미래자원 확보와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해 해양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광기술, 해양수자원에서 리튬추출기술,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등 중점지원	23,800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 (계속 4개, 신규 1개)	• (계속과제) 조류/파력이나 해수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중점지원 • (신규과제) 심해역에서의 에너지 개발 상용화를 위해 부유식 파력-해상풍력을 연계한 발전시스템 개발을 신규 추진	16,000
해양환경 기술개발 (계속 7개, 신규 2개)	• (계속과제) 해양생태계 복원 보전연구 지원확대 및 해양오염제거기술 해양위해성 평가, 기술변화 대응 연구 등 지속지원 • (신규과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험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연구 및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지표 환경변화 연구 신규 지원	24,716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계속 8개)	• (계속과제) 해양생명공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선도 기술 개발 중점 지원	23,030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계속 7개, 신규 2개)	• (계속과제) 양극해 환경변화 연구지역 확대 및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다목적 무인선 등 실물제작화 • (신규과제) 수중건설로봇, 심해잠수정 운용 인프라 구축 및 심해 3,000m급 해양플랜트 구조물 성능평가를 위한 심해공학수조구축 등 추진	22,910
남극 제2기지 건설 (계속 1개)	• (계속과제) 남극 제2기지 2단계 공사추진	33,500

구분	사업내용	2013년 예산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 (계속 1개)	• (계속과제)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실시설계 및 건조	23,600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계속 7개, 신규 3개)	• (계속과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위성활동 국토 해양 탄소지도 개발, 국내외 해양과학조사 연구 등 계속지원 • (신규과제)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축연구, 정지 궤도 해양위성 활용연구, 연안침식대응 기술개발 신규 지원	27,100
차세대 해양관측위성 개발사업 (계속 1개)	• (계속과제) 4개부처 공동개발인 정지궤도 복합위성의 해양탐재체 개발을 위한 탑재체 예비 및 상세설계 추진	5,000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계속 미정, 신규 16개)	• (계속과제) 2, 3년차 과제 중간평가 실시 후 계속지원 • (신규과제) 해양중소벤처지원 신규과제 예산지원 확대	7,000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 (계속 11개, 신규 1개)	• (계속과제) 녹색선박 시험인증 센터 구축 및 차세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현장 시범적용 등 중점지원 • (신규과제) 상시공모과제로 해양사고기술분야 및 해양 교통시설분야 구성	13,475
첨단항만물류 기술개발 (계속 7개, 신규 1개)	• (계속과제) 항만 수중공사용 무인다목적 장비 기술,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기술, 기후변화 대응 안전항만 기술개발, 투명하고 단절없는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중점지원 • (신규과제) 저탄소 자동화 녹색항만을 위한 신개념 항만컨테이너터미널 시스템 기술개발 신규지원	8,590
해양R&D 역량강화사업 (계속 6개, 신규 16개)	• (계속과제) 미래해양자원 확보와 신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해양R&D 사업발굴과 국제기구참여 및 공동연구 사업 중점지원 • (신규과제) 해양연구기획대상과제 중 시급성을 고려 선발 후 신규지원	2,895
해양기술지역 특성화사업 (계속 7개)	• (계속과제) 7개 지역 지정으로 사업광역화 완료에 따라 각 지역별 해양관련 현안 발굴 및 인력양성에 중점 지원	4,550
총계		236,166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1개 분야, 2,362억원

✓ 신청방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mst.re.kr>)에서 신청

↘ 문의처

www.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02)3460-4031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20-5229



출연자원

관련부처
환경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3.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환경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은 실증사업화 과제외의 경우 기업 또는 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주요사업

구분	사업내용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내환경기술·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환경질 개선 및 녹색성장 주도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환경융합신기술 개발사업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창출 등 환경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해 기술융합을 통한 고효율 환경기술 개발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이 시급한 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을 위한 집중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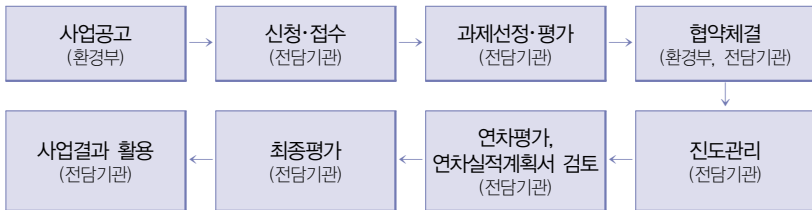
- 지원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조건	지원금액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사업	- 기업유형에 따라 총 연구비의 50~75% 이내 지원 - 기술료 납부 (정부출연금의 10~40%, 기술개발 후 5년 이내)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정수대상 기술료의 50% 감면	과제당 5억원 이내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사업		과제당 3억원 이내
환경융합신기술사업		과제당 5억원 이내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과제당 7억원 이내

✓ 지원규모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 99억원(신규)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 215억원 이내(신규)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 52억원 내외(신규)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19억원(신규)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 2013년 3월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 2013년 3월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 1차 : 2013년 4월 / 2차 8월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 2012년 5~6월
 - 1차 : 2013년 4월 / 2차 8월
- 접수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신청

문의처

www.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티사업실 (02)380-0351, 0352, 0337
-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토양환경기술센터 (02)380-0383, 0385
-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환경사업실 (02)380-0369, 0368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미래환경사업실 (02)380-0374, 0362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5



출연자원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4-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반 기술개발 및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1.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
- 지원과제(지정공모) : 16개 과제, '13년도 사업비 51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2.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농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현대화 기술, 첨단 농자재 개발기술, IT 융합 농산물 유통·물류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
- 지원과제(지정공모) : 11개 과제, '13년도 사업비 49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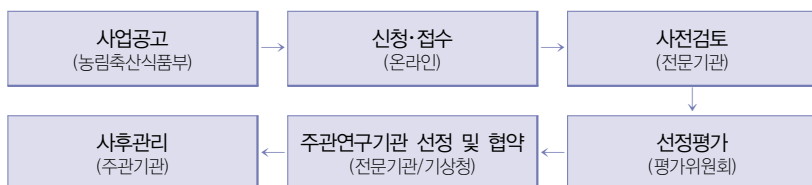
3.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FTA, DDA에 따른 세계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산물 수출 촉진 기술개발 지원
- 지원과제(지정공모) : 6개 과제, '13년도 사업비 22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4. 가축질병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사후 관리 등 전주기적 기술 개발 및 동물용 의약품 개발 지원
- 지원과제(지정공모) : 9개 과제, '13년도 사업비 39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 추진절차



* (전문기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29(월) ~ 5. 13(월)
- 접수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사업마당 (<http://www.ipet.re.kr>)에 접속하여 온라인접수

↳ 문의처

www.ipet.re.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도지원실 (031)420-6752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출연자원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4-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21세기 대표적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보건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지원과제 (2013년 신기술개발 분야)
 - 첨단의료기술개발
 - 세부과제 :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지원, 유망보건의료, 줄기세포·재상의료
 - 지원사업비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3~12억원 이내, 1~3년 이내
 -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 세부과제 : 면역백신개발
 - 지원사업비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3.5~12억원 이내, 5년 이내
 - 국산희귀의약품연구개발
 - 세부과제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유망 치료재료 개발
 - 지원사업비 및 기간 : 과제당 연간 6~18억원 이내, 2년 이내
- 기술료 징수
 - 영리법인인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10~40%(대기업 4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10%)의 기술료 납부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상반기) 4월, (하반기) 7월
- 신청방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에서 전산입력 후 우편접수



문의처

www.htdream.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지원팀 (043)713-841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2)2023-7595

출연지원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4-6.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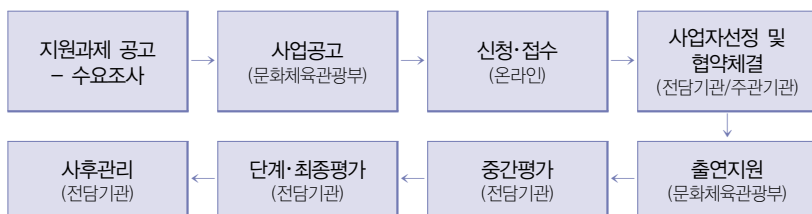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
- 아래 지원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지원내용

- 문화콘텐츠 부문 : 만화·출판·음악, 스마트콘텐츠, 게임 분야 총 3개 과제
- 문화예술부문 : 공연, 전시, 공예 분야 총 6개 과제
- 서비스R&D : 서비스혁신, 글로벌 분야 총 4개 과제
- 지원규모 : 56억원
 - 총 연구개발비의 50~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조건 : 과제 종료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납부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2. 27(수) ~ 4. 8(월)

- 2차 : 2013. 5. 30(목) ~ 7. 2(화)
- 3차 : 2013. 7. 19(금) ~ 8. 20(화)
- 신청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CT전략팀 (02)3704-135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90

출연지원

관련부처
산림청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7.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산림청)

산업·임업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함
 - 기업,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국공립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과학관련 연구기관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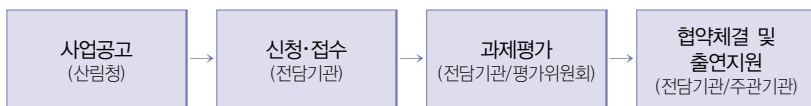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산림과학 기초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연구기간	지원한도
산림사업기술개발 관련 4개 과제	6년	35억원
목질재료 바이오산업화 관련 6개 과제	6년	45억원

- 기획과제(지정공모)
 -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연구 등 12개 과제로 연구기간 2~5년, 과제당 최대 9억원까지 지원
- 자유공모과제
 -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산림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실용화·산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첨단 신기술 개발 과제로 연구기간 3년 이내, 과제당 최대 4억원까지 지원

✓ 추진절차



* (전담기관) 산림청 산림정책과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산림과학 기초연구 지원사업 및 기획과제(지정공모)
: 2013. 5. 9(목) ~ 5. 15(수)
 - 자유공모 : 2013. 4. 12(금) ~ 4. 18(목)
- 신청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ftis.forest.go.kr>)에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forest.go.kr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6, 4220

출연지원

관련부처
기상청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4-8.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기상·지진분야의 핵심기반기술개발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도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기상기술개발사업 : 기상예보 및 기상관측 기술분야 지정공모 4개 과제
 - 연구기관 2~3년 이내, 과제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 기후변화감시·예측 및 국가 정책지원강화 : 기후변화 예측 및 감시 기술분야 지정공모 2개 과제
 - 연구기관 2~3년 이내, 과제당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지진기술개발사업 : 화산 감시 관측 및 예측분야 지정공모 1개 과제
 - 연구기관 2년 이내, 과제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50~75% 이내 출연지원

✓ 추진절차



* (전담기관)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4. 1(월) ~ 4. 8(월)
 - 2차 : 2013. 8. 1(목) ~ 8. 20(화)
- 신청방법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www.cater.re.kr / www.apcc21.net

기상기술개발원 연구평가팀

- 기상기술개발사업 : 070-4617-3774
- 지진기술개발사업 : 070-4617-3779

APEC 기후센터 기후정책실

- 기후변화감사·예측 및 국가정책지원강화 : (051)745-3918
- 기상청 기상기술과 (02)2181-0714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1.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현역입영대상자(석사 이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학사)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연구기관)에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지원대상

- 병역 지정업체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산업체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박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가능
 - 보충역 학사는 중소기업에 한해 근무 가능

✓ 지원절차

1. 지정업체 신청원서 제출

-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1월) / 하반기(6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 매년 5, 12월에 설명회 개최
-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공문 1부(신청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 담당부서, 담당자(직위, 성명), 전화, 팩스 등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1부(「병역법」 시행규칙 별지53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 말소사항본 포함,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 발급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1부(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세무·회계사 발급)와 ‘학위수여증명서’(학교장 발급)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1부

-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벤처기업에 한함)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1부
- 필요인원 통보서상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 사본 1부
 - 특허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등
-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 ‘변경신고 수리 결과 통보공문’ 사본 1부(접수 시작일 기준 가장 최근 내역)
-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1부
- 연구기관 약도 1부(임의 작성)

2. 선정 추천

- 추천기간 : 매년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 상반기에는 중소·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
- 추천요령
 - 지정업체 추천권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서류검토 및 필요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선정기준에 합당한 연구기관에 한하여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의거, 추천등급(A~J등급) 및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

3.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장은 추천기관(미래창조과학부)장의 추천등급에 따라 우수 연구기관(상위등급)에 대해서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
- 선정기간 : 매년 상반기(4월) / 하반기(10월)
 - 상반기 접수 : 4월 선정 / 하반기 접수 : 10월 선정
- 병무청장은 연구분야(자연계 기업, 대학, 방위산업 등)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등급을 고려하여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등급별로 차등 배정함(연구성과, 채용률, 관리상태 등 고려)

4.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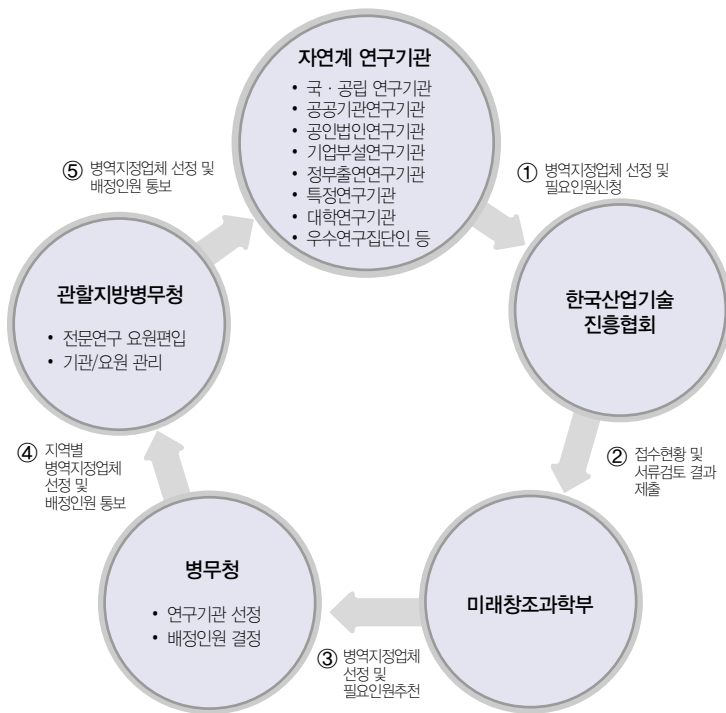
-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 선정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함

- 한편, 상반기(1월)에 신청하여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기존의 지정업체와 마찬가지로 「병역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매년 6월 신청 기간 내에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통보해야 함
- 미신청시 다음 연도의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5. 전문연구요원 채용(편입)

-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로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구소 소재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여 편입승인을 받음

[전문연구요원 제도 업무처리 절차(자연계)]



✓ 선정비율

[최근 3년간 지정업체 선정비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신청	선정	%	신청	선정	%	신청	선정	%	신청	선정	%
중소기업	599	198	33.0	563	185	32.9	435	136	31.3	532	173	32.5
대 기 업	66	24	36.3	84	11	13.1	11	2	18.2	53	12	22.6

* 2012년부터는 대기업에 인원배정을 제한함

TIP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에서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예상 추천 점수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www.rndjm.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증개센터 (02)3460-9089, 9088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10-2574
병무청 대전본청 (042)481-2813, 2818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2.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연구소를 퇴직한 과학기술자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연구소를 보유한 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제외
- 퇴직과학기술자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에 채용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교수 이상, 대기업 연구소 책임급(차장)이상 퇴직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구·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사업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과학기술자
 - 주별 3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신청 및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간(201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업 또는 인력이 동 사업으로 2회 이상 중단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접수 시작일 기준 현재 당해기업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현재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신청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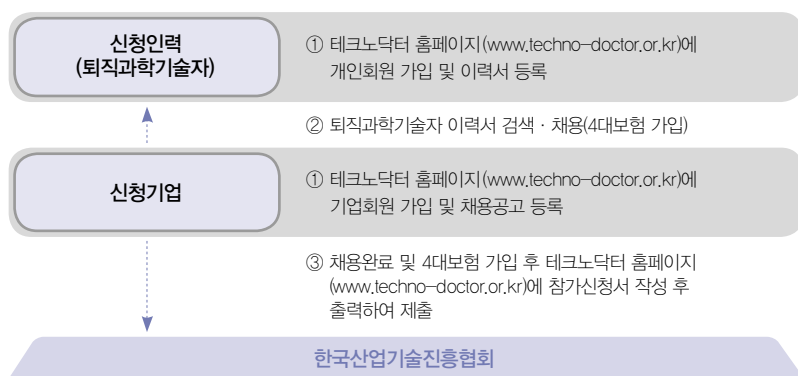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최장 2년 10개월
*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인원 : 중소기업당 1명 지원
- 정부지원금 : 6,120만원(3차년까지 지원 받을 경우)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기간	2013. 3. 1 ~ 2013. 12. 31(10개월)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2015. 1. 1 ~ 2015. 12. 31(12개월)
기준연봉	10개월 기준 2,5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1,800만원 (월 180만원)	2,160만원 (월 180만원)	2,160만원 (월 180만원)
기업부담금	70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이노비즈 인증기업
- 여성 신청인력 채용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 퇴직 후 5년이내 채용한 퇴직과학기술자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퇴직과학기술자 채용완료 및 4대보험 가입 후 테크노닥터 홈페이지 (<http://www.techno-doctor.or.kr>)에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출력하여 (관련 제반서류 반드시 첨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에 인력을 채용하고 4대보험 가입 후 신청

신청기간	신청조건
2013. 1. 7 ~ 2. 15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에 2012. 10. 7 ~ 2013. 2. 15까지 채용된 자

문의처

www.techno-doctor.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122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10-2574



인력자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신규 인력 채용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주는 인력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 산업(100인 이하)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속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인턴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인턴 참여자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우대사항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청년, 가정부양책임자 등 취약 청년

－ 제외대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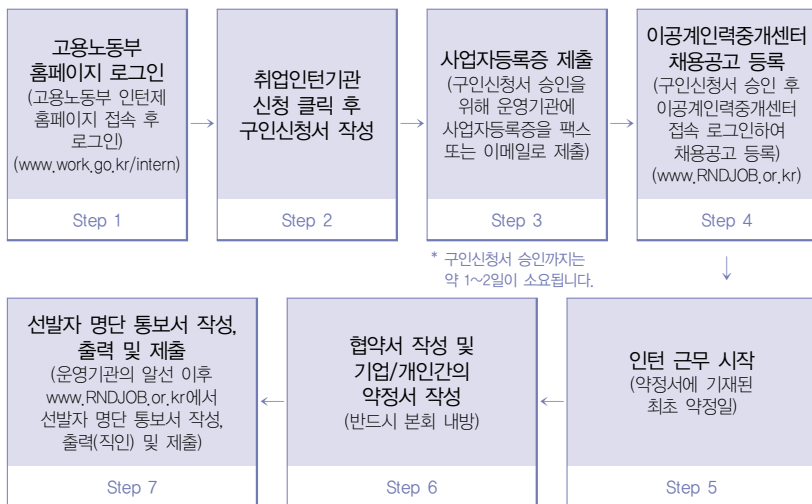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기간 근로(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내)나 일용근로 형태 취업자 참여 가능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자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안 지원
- 지원한도 및 기간 : 최고 월 80만원, 최대 6개월
- 채용한도
 - －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규모별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에서 인턴 채용이 가능
- 추가지원 : 정규직 전환시
 - － 인턴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
 - － 지원금은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
- 주의사항
 - － 사전직무교육은 인턴채용 전·후 1차 지원금 신청전 인턴이 반드시 이수(교육 이수증 제출)
 - － 기업과 산기협 간 인턴지원협약 체결 전 근무가 시작된 인턴은 지원 불가
 - － 인턴 및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기간 동안 기업 내 인위적 감원발생시 인턴지원금 지급중단

✓ 지원절차



*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인턴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에 로그인하여 '취업인턴기관 신청' 온라인 작성

문의처

www.RNDJOB.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86, 9087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2110-7177



인력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4.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능력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의 역량향상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인력 : 특성화고 졸업, 전문학사,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인력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미취업자이며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중 특성화 고졸, 전문학사, 학사 등 학사급 이하 인력
- 제외대상
 - 채용인력이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채용인력이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한국인이 아닌 자 등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2년동안 기업별 2명 이내 지원
 - 1차년도 지원 후 진도점검을 통해 ‘계속지원’ 판정이 날 경우 2차년도 정부 지원금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인건비 920만원, 능력개발비 345만원(학사기준)
 - 인건비는 기준연봉의 40%, 능력개발비용은 기준연봉의 15%

- 단, 능력개발비용*은 정부지원금을 보조받기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 사용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

* 야간대학(원) 등 상급학교 진학 학비, 학점인증제도에서 인정하는 외부전문교육, 업무관련 전문교육 등

[정부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고졸	전문학사	학사
기준연봉		17,000	21,000	23,000
	정부지원금(1년)	9,350	11,550	12,650
	인건비	6,800	8,400	9,200
	능력개발비	2,550	3,150	3,4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등,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사업신청기간 중 미취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하여 기업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0억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3. 11(월) ~ 5. 16(목)
 - 2차 : 2013. 7. 1(월) ~ 9. 30(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첨부서류 등록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02)3460-9090, 9083, 9084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35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5.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세계적 수준의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연구개발 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이전 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연구소 보유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 대상분야 : 기초분야, 기계·소재·항공우주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 화공·생명과학분야, 자원·해양·환경·건설분야, 에너지분야, 과학기술정책 및 기타과학분야
- 초빙대상
 - 박사 학위 취득 후 해외 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외국인 및 교포 과학기술자
 - 기업연구소에서 초빙하는 경우, 박사 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자도 가능

✓ 지원내용

- 연구지원비
 - 초빙 대상자의 연구경력 및 해당 국가에서의 현지보수, 과학논문 인용색인 지수(SCI) 저널논문 게재 실적, 특허 건수, 활용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원
 - 중소기업 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에서 10% 부담 (대기업의 경우 연구지원비의 50% 매칭 필수)
- 유치 경비(항공료, 이사비, 상해·질병보험료)
 - 항공료 : Economy Class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활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왕복 항공료 지원
 - 이사비 : 활용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초빙대상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출국시에 지급
 - 상해·질병보험료 : 해외고급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지원

- 활용기관이 보험회사 상품 활용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외고급과학자 부담분 보험료도 인정
- 활용방법
 - 기존 또는 신규 연구개발팀에 합류시켜 공동연구 수행
 - 활용기간동안 해당 활용기관에서 Full-Time 근무
- 활용기간
 - 3개월 이상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활용기간 만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3년차에는 연구지원비의 50%를 주관연구기관에서 부담)

✓ 유의사항

- 2013년 과제의 초빙과학자는 2013년 12월말까지 필히 입국해야 함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초빙과학자의 주거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30(목)까지
- 신청방법 : 브레인풀 홈페이지(<http://www.brainpool.or.kr>) 온라인 지원신청



문의처

www.brainpool.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본부 국제협력팀 (02)3420-1252, 1254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10-2571



인력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6.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에게 우리나라의 사증 취득과 국내 체류관련(자격·활동·기간 등) 허가 과정에서의 편리함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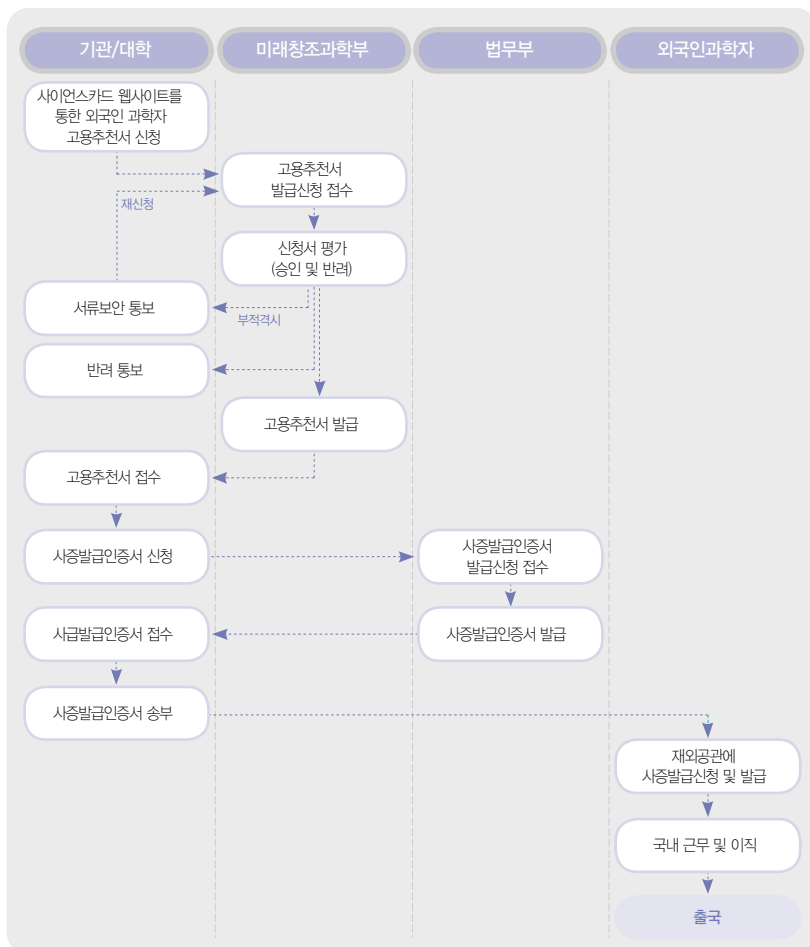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기관 : 연구소 보유기업, 대학, 연구기관
- 지원인력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 복수비자 발급(유효기간 : 5년)
 - 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 국가의 국민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 체류허가 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
- 체류자격 : 교수 또는 연구
 - 교수(E-1) : 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연구(E-3) :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체류기간 : 5년 이하(고용계약기간 동안)
 - 고용계약 연장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무제한 체류도 가능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Science Card 홈페이지(<http://www.scard.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card.go.kr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협력담당관 (02)2110-2285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7.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해외기술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KOTRA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장(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지원하여 출·입국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8개 기술분야*에서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춘 해외 첨단기술인재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해당분야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해당분야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소지자

* 8개 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 지원내용

- 복수비자 발급 : 새 입국허가 불필요
- 비자발급 상한기간 : 최대 5년(실제로는 고용계약기간으로 발급됨)
 - 고용기간 연장시 E-7 비자도 무한 연장 가능
- 영주권 발급우대 : 국내거주 3년 후 영주비자 신청 가능
- 배우자 취업 허용 : 동반(F-2)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변경 가능
- 국내에서 이직하여 근무처 변경 가능(원고용주 동의서 필요)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contactkorea.go.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contactkorea.go.kr

KOTRA Contact Korea (02)3460-7376, 7398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8.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해외 전문인력 유치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 잠재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전담 기구(Contact Korea)를 KOTRA에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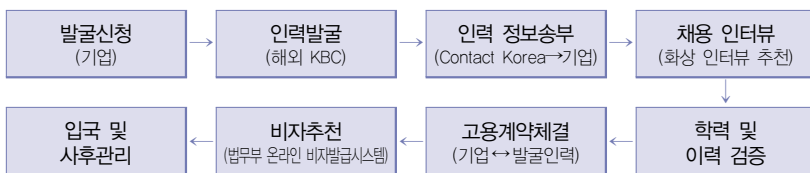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국내기업(중소기업 우선),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 유치대상
 - 경영, 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
 - 경영자, 연구원, 엔지니어, 교수, 금융/의료/디자인/건설/첨단산업관련 전문가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인재
 -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학사 또는 경력 1년이상 석·박사

✓ 지원내용

- 전문인력의 발굴에서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 검증, 비자추천, 국내취업 후 정착하기까지 Total Care Service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contactkorea.go.kr>)에서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contactkorea.go.kr

KOTRA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02)3460-7373~5

인력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9.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우수인력의 발굴·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전문인력난 해소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 처리,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도입인력의 자격

구분	기술분야
학위 및 경력	- 정규 대학(원)의 기술 및 경영분야 학위취득자 - 해당분야 박사 학위자 - 해당분야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 경력 보유자 (국내 대학 석사 학위 취득자는 경력 무관) - 해당분야 학사 학위자는 5년 이상 경력 - 비학위자는 해당기술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체류자격	-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 관리자, 전문가, 공학기술자(기능원 제외),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 등 * 단 선진국인력의 경우 C-4, E-4 사증소지자 및 준하는 자격보유자도 가능

* 보조금 지원 없이 사증추천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사증발급 요건에 따름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이력검증 실시

* 선진국 : G7(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및 미래부 선정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상위 10개국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 지원내용

- 체제비 : 연간 1,000~2,000만원/인 이내
 - 인력의 학력, 경력, 연봉수준 등 고려하여 지원금 차등화
- 항공료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국제선, 편도 기준)
- 인력발굴비용 : 수도권 200만원/인, 비수도권 300만원/인 한도
 - 중진공 등록 인력발굴 전문기관에 발굴 의뢰 또는 업체 자체 발굴
- 사증추천 :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

* 중진공 발급가능 대상 직종에 한함

✓ 지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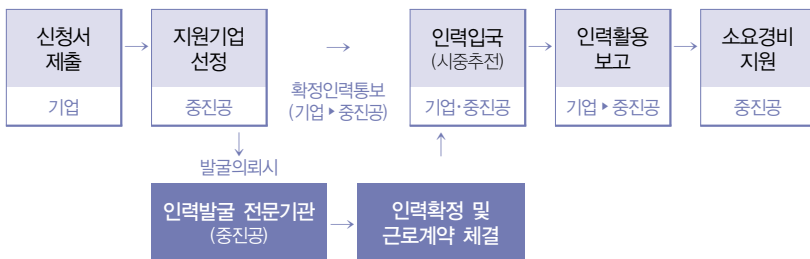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명 이내

* '11년 지원현황 : 신청인원 374명 중 224명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300만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34억원(190명 도입)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1. 25(금)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02)769-6475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0.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mismatch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 (이공계 석·박사)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12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
 - 신청 제외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인재지원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이거나 외감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등
- 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로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만 의·치·약학 학위자 신청가능
 - 디자인 학위소지자 신청가능
 - 신청 제외대상
 - 동사업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각 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이 확정된 자
 - 채용인력이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매년 평가를 통하여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신규 지원규모 400명 내외)
- 지원조건 : 고용지원기업은 기준연봉 이상을 지원인력에게 지급하고, 지원인력을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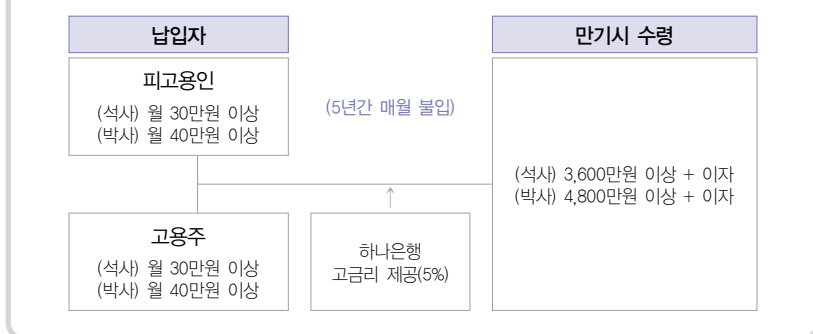
구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2,700	3,300
정부지원금	1,350	1,650
(기준연봉대비)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선정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5년)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링 적금’을 가입 (선정기업에 별도 안내)

■ 희망엔지니어 적금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차) 3~5월 / (2차) 6~8월 / (3차) 9~11월
- 신청방법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http://partner.istk.re.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입력 및 제출

↘ 문의처

<http://partner.istk.re.kr>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76-7630, 7633, 769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511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1. 기술인재지원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의 핵심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장기(3년) 파견하여 핵심 R&D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함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2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인력 :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선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지원내용
 - 정부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지원대상 기업에 파견하여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에 활용토록 지원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규모 : 지원인력 급여의 50%, 기업당 최대 1명을 3년간(최대 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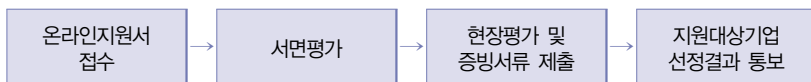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50% 부담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70% 부담

- 법적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수행비(복지포인트, 학자금부담,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 외 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 별도 부담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45억원(신규 50억원 내외)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월 ~ 10월
 - 1차 접수기간 : 2013. 3. 1(월) ~ 5. 20(월)
 - 수시 접수기간 : 2013. 7. 1(월) ~ 10. 31(목)
- 신청방법 : 기술인재공급 및 활용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http://partner.istk.re.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

↘ 문의처

<http://partner.istk.re.kr>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586-3603, 35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511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12.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에너지 산업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 인력 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프로그램별 해당 기관

✓ 지원내용

- 에너지기초인력양성트랙
 - 지원대상 : 대학과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지원분야 : 건물효율 또는 석유분야(1개), 풍력·지열·수소·연료전지·원자력 분야(2개 내외)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 연 3억원 이내, 최대 4년(2+2년) 이내 지원
- 에너지 정책연계/융복합트랙
 - 지원대상 : 대학과 1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1개), 폐기물·태양광·풍력분야(3개 내외)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이내, 연 5억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지원(2+3)

✓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7억원(신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25(월) ~ 4. 30(화)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관련서류를 우편제출

문의처

www.ketep.re.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팀 (02)3469-8411, 8412, 8418, 8814



인력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3. 브레인스카우팅사업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출연(연)·전문연구기관, 대학(원)에 수요맞춤형 고급해외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기술경쟁력 향상, 비즈니스역량 강화 및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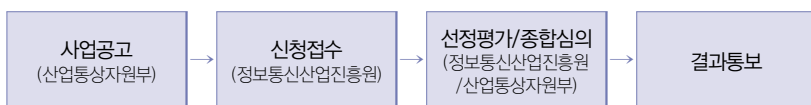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참여기관 :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기업 또는 출연(연)·전문연구기관, 대학(원)
 - 중소·중견기업 : 신청서접수 마감일 전월에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체 또는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
- 참여인력 : 국내기관의 수요에 적합한 한인(외국 시민권·영주권 소지자도 가능)으로, 해당분야 해외현지 산업체·연구기관·대학(원) 등에서 3년 이상의 연구개발·기술경영 등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 지원내용
 -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출연(연)·전문연구기관, 대학(원)에 신청기관의 종류·인재활용 기간·직무 범위 등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해외인재 유치비용(인건비·연구비·정주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3. 11(월) ~ 4. 19(금)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반인력팀 (042)710-1336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02)2110-5248

Part 5

기술지원

- 1 기술개발
- 2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 3 특허전략
- 4 기타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기업중심의 지식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최신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문화를 구축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과제도출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식클러스터 지원
 - 주관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연구소,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 참여기관 : 2개 이상 기술분야의 8개 이상 기업 반드시 참여
-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주관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 참여기관 : 연구소 보유기업 2개 이상 반드시 참여

✓ 지원내용

1. 지식클러스터 지원
 - 지원내용
 - 지식클러스터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정보교류 활동
 - 핵심융합기술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제 기획
 - 지식클러스터 참여기업의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전문가의 기술멘토링
 - 지식클러스터 활동과 연계한 기업수요 중심의 단기 애로기술해결
 - 지원규모 : 클러스터당 8천만원 내외(총 13억원 내외)
2.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지식클러스터를 통해 도출된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 지원규모 : 총 9억원 내외

✓ 추진절차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29(수) ~ 6. 28(금)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우편접수

☞ 문의처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02)3460-9060, 9063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이공계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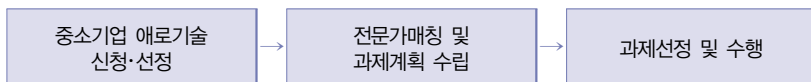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융·복합 관련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융합전문가 및 이공계전문가를 통한 애로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기술개발 애로사항 등을 단기간에 해결 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출연금 2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4개월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75% 이내, 기업부담금 25% 이상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 3차 접수모집(단, 예산소진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 1차 : 4. 8(월) ~ 5. 7(화), 2차 : 6. 17(월) ~ 7. 16(화), 3차 : 8. 5(월) ~ 9. 4(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융합중앙회 (02)769-6436, 6437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3976, 4445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3.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중소기업당 한 개 과제만 신청가능(당해년도 기준)

분야	과제	지원대상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업력·업종 제한없음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 컨설팅	일반 창업기업(업력 5년 미만)
	원스톱 창업지원	(예비)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업력 제한없음·제조업 기술분야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해 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정혁신, 지속성장, 창업 컨설팅 : 경영·기술 전분야 컨설팅(생산기술, 공정 혁신, 원가·품질개선, 마케팅, 재무·인사전략, 조직운영,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연속성 계획(재난대응), 정보기술 등)
 - 원스톱 창업지원 :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절차 대행, 창업공장 설립 등
 - 해외전문가 컨설팅 : 첨단·핵심 기술분야(제품설계 및 해석, 신기술(제품) 개발, 신공법 도입, 원가·품질개선 등)
- 지원규모

분야	과제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수행기간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 사업비 한도없음)	과제규모에 따라 30~50%	최대 6개월 (2개월 연장 가능, 1회)
수요자 선택형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 컨설팅	최대 13백만원 (총 사업비 2천만원)	정부 65%, 기업 35%	
	원스톱 창업지원	최대 8백만원		
특화형	해외전문가 컨설팅	최대 30백만원 (총 사업비 한도없음)	과제규모에 따라 30~50%	

✓ 우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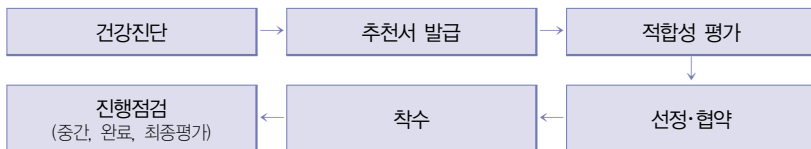
-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PPM, IMS인증 보유 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사회적기업

✓ 총예산

- 총예산 : 128억원
 - 건강진단 연계형 54억원, 수요자 선택형 71억원, 특화형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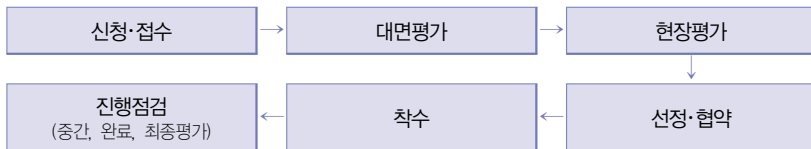
✓ 추진절차

- 공정혁신 컨설팅(건강진단 연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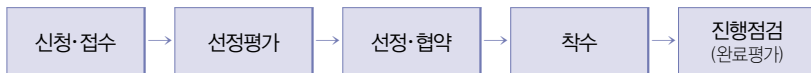


* 현장평가 생략(Fast Track 운영)

- 지속성장 컨설팅 및 창업 컨설팅(수요자 선택형)



- 원스톱 창업지원(수요자 선택형)



- 해외전문가 컨설팅(특화형)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컨설팅은 분기별 신청·접수(2, 5, 8, 10월)
 - 그 외는 연중 수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smbac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www.smbacon.go.kr

중소기업 R&D 콜센터 1661-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42)388-0322, 0323, 0324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02)769-6672, 6916

(지속성장, 창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컨설팅지원팀 (02)6205-8121, 8123

(공정혁신 컨설팅, 해외전문가 컨설팅)한국컨설팅서비스협회 컨설팅사업부 (02)553-3808

(원스톱 창업지원)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컨설팅지원팀 (042)256-1072, 1070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4523, 8909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1-4.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산업기술분야 출연(연)의 연구자원(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한 기업
- 지원주체 : 산업기술분야 11개 출연(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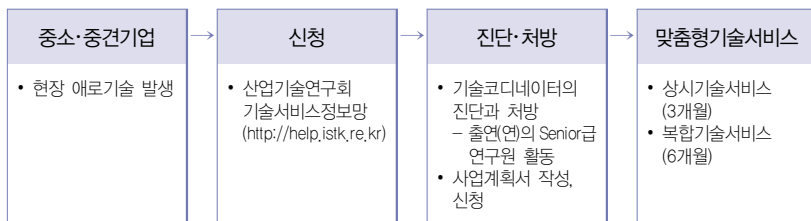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지식서비스, 농림수산/생명과학/보건의료 등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규모
기술코디네이터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진단, 처방하여 최적의 해결방안 제시	20명
맞춤형기술 서비스사업	상시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 지원	10백만원 이내/ 과제당
	복합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 6개월 이내 집중지원	40백만원 이내/ 과제당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상시 기술 서비스사업만 지원가능

- 유의사항 : 총 사업비의 10~20% 기업에서 부담하여 총액산정
 - 중소기업 : 매출액 100억 이하는 10%, 100억 초과는 15%
 - 중견기업 : 20%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지원 홈페이지(<http://help.istk.re.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istk.re.kr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02)576-14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511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5.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용 3%이상 기업(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 * 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함
 - 창업과제 :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수요조사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16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류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지원규모 : 35억원(150개 과제)
 - 1차 : 20억원(95개 과제)
 - 2차 : 15억원(55개 과제)
- 지원요건
 - 혁신과제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부담(현물 20%, 현금 15%)

- 창업과제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물 20%, 현금 5%)

TIP 연계지원 평가결과 우수과제로 추천된 과제는 2014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능합니다.

-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5억원/최대 2년),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산연과제, 6억원/최대 2년)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2억원/최대 1년)

✓ 추진절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더비엔아이, 특허법인 프렌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 : 2013. 2. 18(월) ~ 3. 8(금)
 - 2차 : 2013. 4. 29(월) ~ 5. 24(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더비엔아이 (02)3476-5500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 459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6.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5년 이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업그레이드과제 : '08~'11년도 로드맵 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업그레이드 기지원 기업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 신규과제 : 신기술과제 도출에 따른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및 제안요청서(RFP)를 포함한 기획보고서 제공
 - 업그레이드 과제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로드맵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업그레이드 지원('08~'11년 지원과제 대상)
- 지원분야 :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 지원규모 : 10억원(60개 과제)
 - 신규과제 : 9억원(35개 과제 내외)
 - 업그레이드 과제 : 1억원(25개 과제 내외)
- 지원조건
 - 신규과제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물 20%, 현금 5%)
 - 업그레이드과제 :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TIP

로드맵 수립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기획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가능합니다.

- 차년도 R&D기획지원과 연계를 통해 심층기획 지원 후 향후 R&D사업과 연계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4. 29(월) ~ 5. 24(금)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콜센터 1661-1357(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2-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유망기술 및 우수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주관기관 : 중소 및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1/2 이상
- 글로벌공동형(BM기획)
 - 주관기관 : 중소 및 중견기업
 - 참여기관 : BA는 1개 이상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BA 참여시 기관별 민간부담금은 과제당 연 30백만원 이상이며, 이 중 현금부담금은 연 10백만원 이상으로 함
 - * BM : Business Model, BA : Business Accelerator(기술사업화전문기관)
- 기관연계형
 - 주관기관 : 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
 - 참여기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특허법인 등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사업화지원 대상기술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건에 한함

[BA 자격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투자법」 제4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지원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융합관광

✓ 지원내용

-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 글로벌시장을 창출·선점할 수 있는 사업화대상 핵심 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지원규모 : 115억원(신규 60억원, 계속 55억원)
- 글로벌공동형(BM기획)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이 제안한 우수 BM의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기술사업화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지원규모 : 109.14억원(신규 61억원, 계속 48.14억원)
 - BM사업화 기획 3억원, BM사업화 개발 58억원
- 기관연계형 :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

- 지원규모 : 67.5억원(신규 27.5억원, BI사업화지원기관 40억원)
- 주관기관별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민간부담금
글로벌공동형(자유공모)		30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상
글로벌공동형 (BM기획)	BM사업화기획	0.2억원	2개월 이내	없음
	BM사업화개발	30억원 이내	2년 이내	총 사업비의 40% 이상
기관연계형		1.5억원 내외	1년 이내	없음

●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정부출연금의 10~40%, 착수기본료에 매출액의 1.25~5%까지 합산하여 징수(단, BM사업화기획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5(월) ~ 8. 7(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서 전산 등록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문의처

www.ar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기술금융지원팀 (02)6009-4341, 4342, 4346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55, 796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6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기술보유자 ▼

2-2. 기술신탁사업

국내 기업·대학·연구소가 보유중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기술 신탁관리기관이 기술의 원소유자를 대신해 신탁 기술의 관리 및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술보유자
 - 연구개발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이외지역 소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에 근거한 기술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② ①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③ ① 또는 ②의 기술에 관한 정보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 지원내용

- 신청한 기술 중 우수기술을 선별·평가하여 기술신탁계약 체결(2년)
- 신탁기술 특허료를 최대 40%까지 지원(연차료 납부대행)
- 신탁기술에 대한 상품화 및 마케팅(양도/라이선싱)
- 기술이전 성사시 신청기관에게 기술료 전액제공(이전수수료 제외)
- 신탁등록/해지시 특허청납부 수수료 지원(등록 후 7년차 이상 특허 제외)
- 신탁기술의 기술이전시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지원
 - * 기술지도비는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위탁기관)에게 지원
 - *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비는 기술이전시 선급기술료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시 신탁관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추진절차



* (신탁관리기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7(화) ~ 5. 24일
-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http://www.kipsi.re.kr>)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서류작성 후 등기우편 및 이메일 신청

↳ 문의처

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02)3287-425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479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2-3.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특허, 경영전략,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제품혁신)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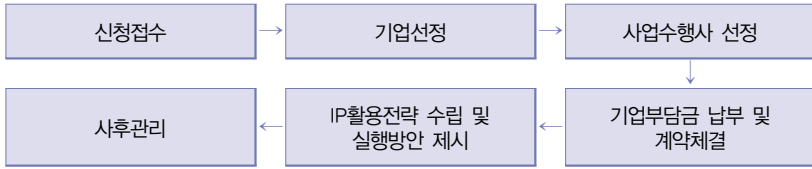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한도	주요 내용
IP경영전략	6천만원 이내 (4개월 이내)	• 심층 진단·분석을 통해 IP경영 전반에 관련된 기업니즈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IP 진단 및 활용가능성 분석, 시장·고객·경쟁사분석, IP 동향분석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전략, 사업 리스크 관리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선택적으로 지원
IP제품전략	7천만원 이내 (5개월 이내)	• (IP제품개발) 보유특허실사, 특허침해 가능성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경쟁사 IP 분석 및 기술 트렌드 파악,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이 반영된 기구설계, Working Mock-up 제작, 양산화 Follow-up 등 지원 • (IP제품혁신) 창의적인 제품혁신방법론과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지원기업의 제품혁신 및 이와 연계된 특허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 연 4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매출액기준으로 차등화하여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매출액 100억 미만 10%, 100억~300억 미만 20%, 300억 이상은 30%)
- 지원방식 :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체결한 사업수행사를 통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제공
- 지원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차(5~9월) / 2차(7~11월)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33, 2937, 2938
 (IP제품개발) (02)3459-2944
 (IP제품혁신) (02)3459-2941
 (IP경영전략) (02)3459-2931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견·대기업

3-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최강 특허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견 및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관계회사 포함시 단일기업 규모가 사업참여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1조원 미만 기업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단일기업의 규모가 사업참여 직전 3년 매출액 평균 기준 1조원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
 -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분야

구분	전략수립과제	IP융·복합과제 (특허-디자인, 디자인-브랜드)
지원 규모	○○개 과제	○개 과제
지원 기간	5개월	5개월
지원 내용	연구개발(R&D)시 해당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IP 획득 전략 및 R&D 전략 수립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과 브랜드 등 지재권 융복합 전략 수립
전략지원 사업비*	120백만원	120백만원
기업 <중견기업>	50% (60백만원)	50% (60백만원)
부담금	현금	36백만원
비율	현물**	2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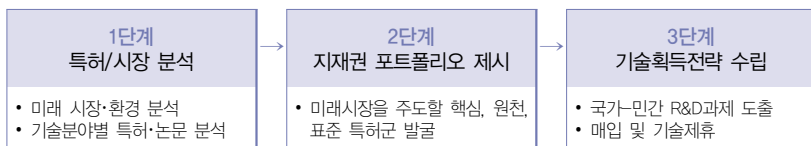
* 전략지원 사업비가 참여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전문위원 인건비, 협력기관(과제수행기관)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참여기관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신규출원, 시장보고서, 시제품제작 비용 등으로 산정

- 지원방식

- 과제수행에 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지재권 전략전문가, 특허분석전문기관 등)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IP-R&D전략 수립지원

- IP-R&D전략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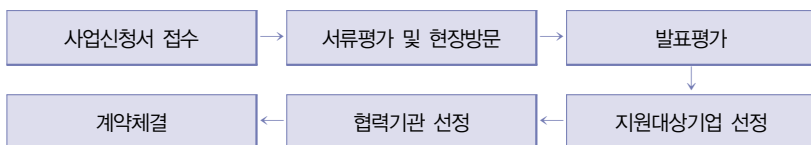


- 지원요건

- 과제당 전략지원사업비 중 30% 현금 및 현물 매칭*, CEO 및 연구자 등의 IP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공간 배정(필요시)

* 기업부담분(50%) 중 60% 현금부담, 40% 현물부담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3년 상반기(11월 中), '13년 하반기(4월 中)
- 신청방법 : IP-R&D사업관리시스템(<http://ippro.rndip.re.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226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703

기술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2.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지식재산(IP)-연구개발(R&D) 연계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 지재권으로 무장한 세계적 수준의 IP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연구조직을 보유한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기준으로 판단
- IP융·복합과제의 경우 부품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
 - 기계·자동차, 화학·소재·바이오, 전기전자·정보통신 및 유관 분야

구분	전략수립과제	IP융·복합과제 (특허-디자인, 디자인-브랜드)
지원 규모	○○개 과제	○개 과제
지원 기간	5개월	5개월
지원 내용	연구개발(R&D)시 해당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IP 획득 전략 및 R&D 전략 수립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과 브랜드 등 지재권 융복합 전략 수립
전략지원 사업비*	100백만원	120백만원
기업 부담금	30% (30백만원)	30% (36백만원)
비율	현금	22.5백만원
	현물**	7.5백만원
비율	현금	27백만원
	현물**	9백만원

* 전략지원 사업비가 참여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전문위원 인건비, 협력기관(과제수행기관)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참여기관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신규출원, 시장보고서, 시제품제작 비용 등으로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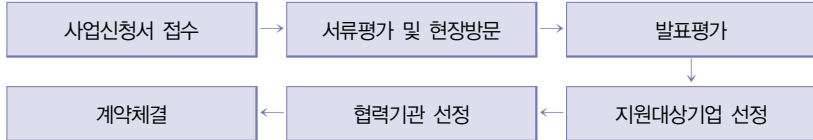
- 지원방식
 - 과제수행에 적합한 IP-R&D 전략지원팀(지재권 전략전문가, 특허분석전문기관 등)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동안 IP-R&D전략 수립지원

- 지원요건

- 과제당 전략지원사업비 중 30% 현금 및 현물 매칭*, CEO 및 연구자 등의 IP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공간 배정(필요시)

* 기업부담분(30%) 중 75% 현금부담, 25% 현물부담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3년 상반기(11월 中), '13년 하반기(4월 中)
- 신청방법 : IP-R&D사업관리시스템(<http://ipro.rndip.re.kr>)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www.kipsi.re.kr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업협력팀 (02)3287-4319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703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4-1.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참여 중소기업, 기타 산업 기술보유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1. 기술보호상담

- 지원내용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법률 등 분야별(보안진단, 보안기술, 법률, 신고·수사) 전문가 상담비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11M/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9.5억원

2. 기술자료임치

- 지원내용 :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 기업의 도산·폐업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
-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 지원규모 : 17.44억원
- 이용수수료
 -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수수료 부담 : 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3.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 보안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대응 보안솔루션 제공, 현장대응 등 지원
- 지원규모 : 18.6억원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9.8억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보호통합포털(<http://www.tpcc.or.kr>),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문의처

www.tpcc.or.kr

(기술보호상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2)3787-0473~8
 (기술자료임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62~5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3489-7051~2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042)481-4400, 4405

기술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

4-2.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혁신 지원사업

산·학·연의 과학기술 전문가 및 슈퍼컴퓨터 활용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 협동조합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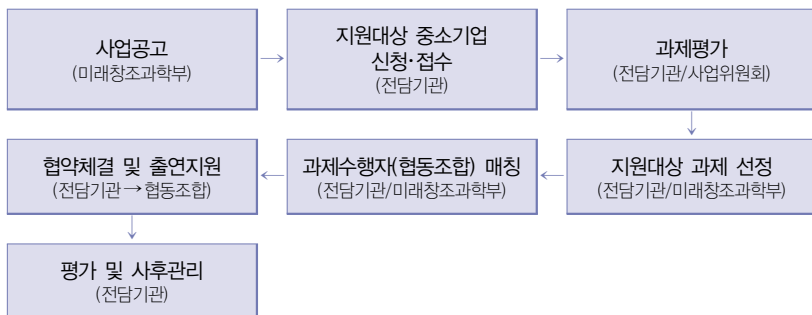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서비스 협동조합
- 사업수행자
 - 산·학·연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규모 : '14년 10개 기업 선정(과제당 국비 지원액 75백만원)
 - ※ 수혜기업은 총사업비의 1/4 이상 분담 필요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제품개발과정 설계, 문제해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국가센터(KISTI) 등에 설치된 슈퍼컴퓨터 및 관련 SW를 활용한 제품개발 시뮬레이션
 - ※ 국가센터(KISTI) 및 지역별 센터에 구축된 자원을 우선 할당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 11~12월
- 신청방법 : 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www.kisti.re.kr>)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의 각 사업별 공지 참고

↘ 문의처

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서비스센터 (042)869-0841
미래창조과학부 원천연구과 (02)2110-2385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4-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 장비이용을 위한 바우처는 예산 소진시까지 정부지원금(최대 5천만원 한도)과 기업부담금을 합산한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참여기업 지원 한도 내에서 사용완료 후 추가구매 가능
 -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 : 정부지원금 70% 범위 내 최대 5천만원까지
 - 일반기업(업력 5년 초과) : 정부지원금 60% 범위 내 최대 5천만원까지
- 지원규모 : 184억원(신규)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2. 25(월)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www.smtech.go.kr

중소기업 R&D플랜터 1661-1357(3)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43

기술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4-4.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사업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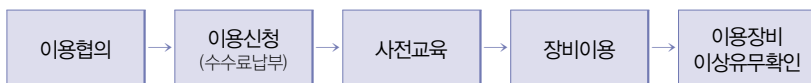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제품의 품질확인,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는 시험연구장비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단, 인증 요건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
 - 이용장비 : 11개 지방중소기업청(서울청 제외, 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 보유하고 있는 전 장비
 - 이용방법 : 민원인이 직접 설비를 작동, 시험진행 과정 및 결과를 즉시 확인
 - 야간시간을 포함한 연중무휴 무료로 이용이 개방되며, 장비이용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와 사전협의가 필요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상시
- 신청방법 : 각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신청서류를 각 지방중소기업청 민원실에 접수

문의처

각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청	부서명	전화
부산·울산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51)601-5140/9
대구·경북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53)659-2282/95
광주·전남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62)360-9151/9
경기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31)201-6960/9
인천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32)450-1160/3
대전·충남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42)865-6140/5
강원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33)260-1640/6
충북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43)230-5340/3
전북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63)210-6450/2
경남	제품성능기술과 (시험연구지원팀)	(055)268-2562/4
제주	제주시험 연구센터	(064)723-2101/3

중소기업청 콜센터 [국번없이] 1357



기술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4-5.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소재분석, 신뢰성 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중소 및 중견 소재부품기업
- 참여기관 :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5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 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 지원근거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수요기업 연계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 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협약서 (또는 MOU) 제출	2년 이내 (연 3억원 내외)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 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1년 이내 (연 1억원 내외)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

* 신뢰성 지원기관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6. 17(월) ~ 6. 21(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방문 및 우편접수

↳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923, 392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02)2110-5507, 5508

Part 6

인증지원

- 1 기업인증
- 2 기술제품인증
- 3 시상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1-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신고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 교원·연구원창업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중기업, 해외기업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 유하고 있을 것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지원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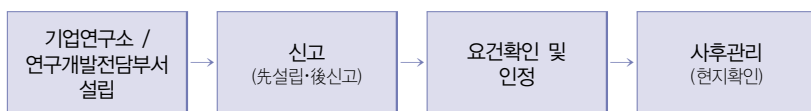
구분	제도명	제도내용	비고
조세 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 우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	기업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원이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 기업에 한함
관세 지원제도	연구개발용 기자재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재료에 대해 관세의 80% 감면	'14년 상반기까지 220개 물품
인력 지원제도	전문연구 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병역대체 복무 인정	중소·중견 연구소에 한함

구분	제도명	제도내용	비고
	테크노닥터 사업	이공계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연구소 퇴직 기술자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에 한함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우수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	중소기업에 한함
자금 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구분	지원제도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X
관세지원제도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자금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	X
법례		○가능, △일부가능, X불가능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방법

-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www.rnd.or.kr>)에서 온라인 신고

문의처

www.rnd.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02)3460-9010~7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81



인증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2.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조세감면 등 각종 정책 혜택을 제공

인증요건

- 다음 각 유형별 기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유형 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유형 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도 기준(5~10%)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적용 제외) 3.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기술평가 보증기업 (보증승인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 (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 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2006.6.4) 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기술보증기금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 4 기술평가 대출기업 (대출승인 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 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 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2006.6.4) 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상기 1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원예택

- 창업, 자금, 인력, 기술, 세제, 기타 입지 등에서 다양한 혜택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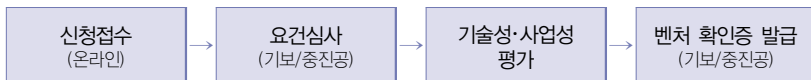
구분		일반한도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3년 이내) -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산업재산권출자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포함
세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 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5. 12. 31까지 벤처 확인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치 않음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의 연대보증기준완화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인력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기회를 연 2회 부여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500㎡이하)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중과세율 적용면제
특허	우선심사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심사 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기타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기요금할인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인하

✓ 확인평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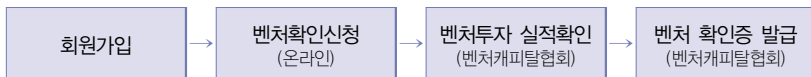
- 확인평가료 : 20만원(VAT별도)
- 확인수수료 : 10만원(VAT별도)

✓ 추진절차

- 기술평가대출(보증)기업/연구개발기업



- 벤처투자기업



✓ 신청방법

- 벤처확인·공시시스템 사이트(<http://www.venturei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www.venturein.or.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700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5

인증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3. 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인증을 통해 기술, 자금, 판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 인증대상

- 신청자격 : 창업 3년 이상의 중소기업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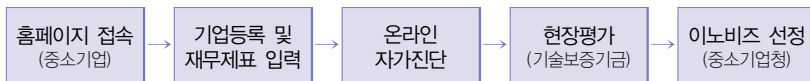
금융기관명	취급 대출상품	해당기관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우대지원	• 보증지원 최고한도를 50억원까지 확대(일반기업 30억) •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85% 고정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은 'kibo A+ 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병행	기술보증기금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R&D평가 특례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 보증요율 10% 할인	서울보증
우대대출	• 시설 및 운영자금 금리우대,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산업은행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우대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각 부처

금융기관명	취급 대출상품	해당기관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기술유출방지사업, 성능인증제도 -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 기타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등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각 부처
공공기관지원사업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 우대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우대 • 특허청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TV, 라디오 광고비 70%할인	각 기관

✓ 기술평가료

- 신규신청 70만원, 재지정 40만원(부가세 별도)
-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인증시 55만원,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시 33만원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이노비즈넷(<http://www.innobiz.net>)에서 기업 등록 후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후 선정

☞ 문의처

www.innobiz.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0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114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1. 신기술(NET)인증제도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신기술(NET)로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진출 및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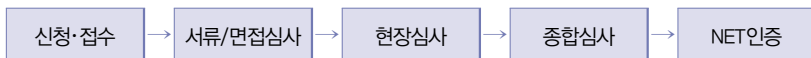
✓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써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지원내용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지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중소기업청)
 - 우수조달제품 선정 우대(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신기술 홍보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절차



- 평가기간 및 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20일 소요
 - 심사수수료(신청기술 1건당) : 1차심사 20만원 / 2차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 인증기간

- 인증기간 : 3년 이내
- 최대 3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
 -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 1월, 4월, 8월(연 3회)
- 신청방법 : NET신기술인증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www.netmark.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2, 9023, 9024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8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2-2. 신제품(NEP)인증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인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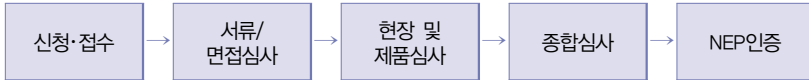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써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내용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 (관련페이지)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 p.299
- 자금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기술지도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중소기업청)
- 기타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추진절차



- 평가기간 및 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평가비용 : 무료
- *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 3년
- 3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의처

www.kats.go.kr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6~9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3. 녹색인증제도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 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 인증대상

-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녹색기술 10대 분야, 85개 사업 중심으로 세부기술 및 핵심(요소)기술 선정
 -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녹색기술범위 매년 갱신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 녹색사업인증
 -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
 -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 녹색전문기업확인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녹색기술 10대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 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지원내용

- 녹색산업 융자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특례 신용 대출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 우대
 -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신청가능
 - 광고료 지원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우대
 - 수출지원사업,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조달청 MAS 우대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
 - 국가 녹색기술 대상 신청시 우대 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사업 참여 우대
 - 특허 우선심사 우대 및 국제출원비용 지원 등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11개 기관

-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인증여부 확정까지 45일 소요
 - 평가비용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단독 30만원, 기술 및 제품 동시신청 12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전문기업확인 무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녹색인증제도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www.greencertif.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02)6009-398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2)2110-5397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2-4.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인증대상

- GR(Good Recycled) 인증 대상품목 : 총 17개 분야 277개 품목지정

분야	대상제품
폐요업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등 42종
폐유리	재활용 유리 대리석 등 9종
폐목재	학생용 책상 상판 등 20종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등 81종
폐고무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등 26종
폐식용유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등 8종
폐산·폐알카리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5종
폐유기용제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등 3종
폐수처리오니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폐유	정제연료유 등 2종
유기성폐기물	부산물비료(퇴비) 등 15종
식물성잔재물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수산물가공잔재물	폐화석 비료 등 3종
폐전지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등 2종
폐섬유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등 12종
폐금속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등 12종
폐지	전자복사용지 등 32종

- 인증대상 제외품목
 - 재자원화가 어려운 제품
 -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지원내용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 자격부여(「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구매 장려 및 의무구매(지방자치단체)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조달청)
- 기타지원
 - 전시회, 판로확대, 홍보 지원
 -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 추진절차



- 평가기간 및 비용
 - 평가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평가비용 : 평가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 부담
- * 단,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름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 * 단, 연장신청시 현장심사와 시험편의 공인시험성적서와 함께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접수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GR제품 정보시스템
(<http://www.buygr.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로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 문의처

www.buygr.or.kr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6~9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1. IR52장영실상

IR(Industrial Research)은 산업기술연구의 약자, 52는 1년 52주 동안 매주 시상한다는 의미로 기업의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신기술 제품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기술 개발자의 사기를 높이고, 언론홍보를 통해 초기 시장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시상제도

✓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중 신청접수 시점 전 2년 이내에 실용화한 제품
- 신청 및 추천자격
 - 신청자격 :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대표
 - 추천자격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타상의 시상권자, 기타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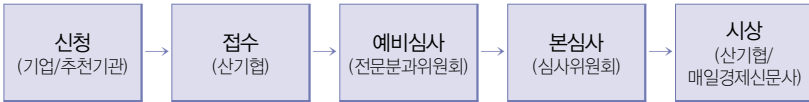
✓ 시상내용

- 수상회사 대표 : 상패와 트로피 증정
- 연구개발자 : 상패와 메달 증정

✓ 지원내용

- 시장진출지원
 - 매일경제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수상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 장영실상 홈페이지, 산기협 발간 월간지 ‘기술과 경영’에 게재 홍보
- 수상자지원
 - 정부의 훈·포장과 과학기술 타상의 수상후보자로 적극 지원
- 금융지원
 - 기업은행, 기술력 우수기업 선정시 수상일로부터 5년간 자금우선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선정시 우선적 보증지원
- 최우수 IR52 장영실상
 - 당해년도 수상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여 최우수상(대통령상) 1개, 우수상(국무총리상) 2개를 각각 시상하는 제도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1월, 4월, 8월(연 3회)
- 신청방법 : IR52 장영실상 홈페이지(<http://www.ir52.com>)에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www.ir52.com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5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10-2468, 2595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2. 이달의 엔지니어상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에서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 조성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새로운 제품의 설계·제조, 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담당하는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에서 이공계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업의 산업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업적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타상이나 포상을 받은 자
 - 기업에 속한 자로서 대학이나 출연(연) 등의 기관에서 동시에 소속되어 연구 개발을 하는 자(단, 수학 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없는 자
- 신청 및 추천자격
 - 신청자격 : 소속 기업의 장
 - 추천자격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타상의 시상권자, 기타 과학기술 관련단체 및 경제단체의 장
 - 추천인원 : 제한없음

✓ 시상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상패, 트로피 및 부상(상금 500만원) 수여
 - 매월 대기업 1명, 중소기업 1명 선정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월, 5월, 9월(연 3회)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6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10-2468, 2595

인증지원

관련부처
미래창조과학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3.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창출한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조경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하는 시상제도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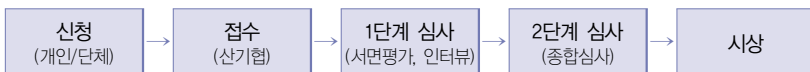
- 자격기준 :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디어로 과감히 도전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창출한 또는 이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등)를 창출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준 단체 또는 개인
- ② 이업종+동업종간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단체 또는 개인
- ③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 산업과 문화, 서비스와 서비스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로 창조경제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상상-도전-창업으로 연계되는 창조경제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

✓ 시상내용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4,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4, 특별상 3(매일경제신문 회장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상, KB국민은행 은행장상) 및 상금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8. 26(월) ~ 9. 27(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www.koit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026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기반과 (02)2110-2468, 2595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4. 대한민국기술대상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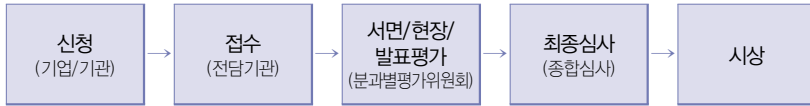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단체(기업, 연구소, 대학 등)
- 신청분야
 - 산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장비
 -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공정, 유전자 정보
 - 신소재, 분석기술, 나노, 응용화학, 정밀화학, 섬유
 - 반도체,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전기응용
 - IT, SW, 통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 오염제어, 자원탐사·활용, 건설, 건축, 토목, 녹색기술, 온실가스 저감
 -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 기타(상기에 적시되지 않은 업종으로 신청기업에서 직접 표기)
- 대상기술 : 기술완료 후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 시상내용

구 분	상 격	상금 및 상품
대 상	대통령상	해당기술 홍보
금 상	국무총리상	
은 상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상	
동 상		
우수상		
특별상	후원사 사장상	

* 포상규모는 안행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7(화) ~ 7. 19(금)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이나 포상사업 홈페이지(<http://www.tstar.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http://www.ketep.re.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 문의처

www.kiat.or.kr / www.tstar.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02)6009-3283, 328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과확산팀 (02)3469-8427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176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대기업 ▼

3-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 신청대상

-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개인)
 -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포상대상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심사
- 성과공유 우수기업·유공자(단체, 개인)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통하여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과공유제 확산에 기여한 단체(기업, 기관) 또는 개인

✓ 시상내용

포상분야	훈격	수량	비고
동반성장 유공자 (개인)	훈장	2	-
	포장	2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10	
	중소기업청장 표창	4	
성과공유 우수기업·유공자 (단체, 개인)	대통령표창	1	접수·심사결과 등에 따라 단체, 개인부문 포상 수량 배정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4	
계		29	

* 포상규모는 관련부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5. 6(월) ~ 6. 10(월)

- 신청방법

- 동반성장유공자 : 신청서 작성 후 동반성장위원회 우편접수
- 성과공유 우수기업·유공자 : 신청서 작성 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우편접수



문의처

www.win-win.or.kr

(동반성장유공자)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02)368-8413

(성과공유 우수기업·유공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02)368-8788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02)2110-3999



인증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3-6. 기술경영(MOT) 우수기업 포상

기술경영을 체계화하고 기술력 및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 및 중견기업을 발굴·포상

✓ 신청대상

- 기술경영을 체계화하여 기술전략, 기술혁신, R&D프로세스 성과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 제2호에 의한 중견기업
 - 단, 기업의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 설립 후 최소 5년 이상('08. 1. 1. 이전에 설립) 기업으로 한정함
 - 3년간 매출액 성장 혹은 3년간 영업이익(+) 혹은 신용평가등급 5등급(중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시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표창장 및 상금 500만원(중소 1개, 중견 1개)
- 산업기술진흥원상 : 표창장 및 상금 300만원(중소 2개, 중견 2개)

✓ 수상혜택 및 의무

- 수상기업에 대해서는 대외(공공) 홍보 지원
 - 수상기업에 대한 성공스토리 등 기업 소개(발간물) 및 기사 게재
 - 기술경영 확산을 위한 MOT 우수사례로써 기술경영 행사발표 유도
 - 대학에서의 학업목적을 위한 기업사례 발굴시 협조 요망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8. 7(수) ~ 9. 3(화)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62, 436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2)2110-5661





구매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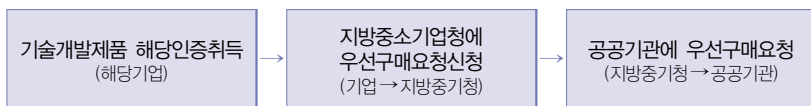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GS(Good Software),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제품(이상 기술표준원),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성능인증제품(중소기업청)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지원내용
 - 해당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이 해당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
- 구매기관 : 3천여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 이내

✓ 추진절차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자격 정보제공
-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제공
-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재무, 기술력 등의 각종 정보제공

문의처

www.smpp.go.kr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509-6755	대전·충남	(042)865-6143
부산·울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3
대구·경북	(053)659-2243	충북	(043)230-5375
광주·전남	(062)360-9144	전북	(063)210-6455
경기	(031)201-6935	경남	(055)268-2573
인천	(032)450-1141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 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 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NET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02)3460-9022	GS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02)2141-5252

구매지원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2.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 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신제품 보유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 지원내용 :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품목 구매금액 중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함
- 구매기관 :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 213개 기관

✓ 추진절차



✓ 인증신제품 종합정보 사이트(www.buynp.or.kr)

- 인증신제품 등록 등 공공구매정보 종합 제공
-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제도 안내 등

문의처

www.buynp.or.kr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02)509-7286~9

구매지원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도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해야 하며 1사 1제품에 한함
- 구매추천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지방단치단체 및 기타 기관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 지원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 지원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TIP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가능 합니다.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 2. 26(화) ~ 3. 25(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www.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팀 (02)3459-2846, 2848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887



구매지원

관련부처
조달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4. 우수제품 지정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써,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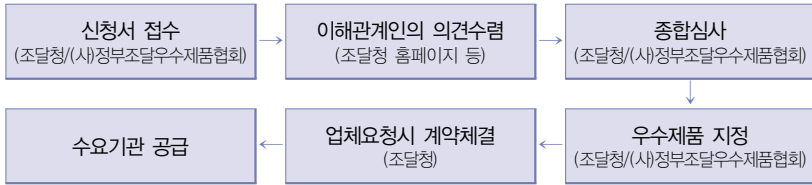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인증제품
 - 기술인증: NEP,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녹색기술인증, 특허, 실용신안
 - 품질인증: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1-14호)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
- 지원내용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
- 지원기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년간 연장 가능

* 단,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최대 3년간 더 연장 가능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3년 2, 4, 6, 8, 10, 12월(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및 방문접수

↳ 문의처

www.pps.go.kr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조달청 우수제품과 070-4056-7285



구매지원

관련부처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5. 성능인증·보험제도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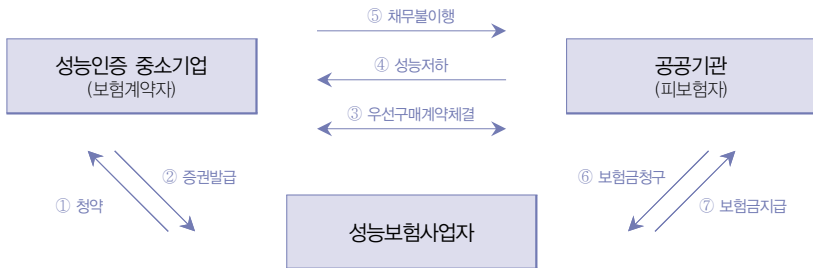
- 성능인증(EPC)제도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
 -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성능보험제도
 - 지원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제도개요 :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제도
 - 지원내용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하며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 보험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 추진절차

• 성능인증(EPC)제도



• 성능보험제도



문의처

www.smba.go.kr / www.smpp.go.kr

각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	(02)509-6744	대전·충남	(042)865-6143
부산·울산	(051)601-5145	강원	(033)260-1643
대구·경북	(053)659-2243	충북	(043)230-5375
광주·전남	(062)360-9144	전북	(063)210-6455
경기	(031)201-6935	경남	(055)268-2573
인천	(032)450-1141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042)481-4581

부 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R&D를 수행하는 각 부처·청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 인력, 장비·기자재,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R&D정보 지식포털

✓ 서비스 내용

- R&D 종합서비스 :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R&D사업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R&D현황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사업관리 : 국가R&D사업의 종합적인 현황과 과제정보, R&D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정보 제공
 - 인력 : 국가R&D에 참여한 연구자의 전공과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성과 : 국가R&D사업으로 창출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공
 - 시설·장비 : 국가R&D사업을 통해 도입된 장비와 기자재의 보다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와 기자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장비를 사용하면서 접하는 애로사항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음
 - 국가R&D Board : 국가R&D사업의 투자, 성과 등의 현황을 간단명료한 그래픽과 함께 부처별, 지역별로 제공
 - 과학기술통계 : 민간R&D투자 현황과 기술무역, 특허 등 국가R&D사업 이외의 각종 통계자료를 다양한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제공
 - 지역R&D 정보서비스 : 지역의 R&D 투자·인력·장비기자재 현장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음
 - 기술·산업 정보서비스
- 정보유통서비스 : 각 부처의 각기 다른 과제관리 과정과 정보화 수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로부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공·정제하여 더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과제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 진행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식별 : 국가R&D 과제에 대한 과제고유번호와 식별자(identifier)를 발급하는 서비스

- 분류 : 과학기술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제 정보를 제공

문의처

www.ntis.g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42)869-1115
미래창조과학부 성과정보관리과 (02)2110-2727



2. R&D도우미센터(www.rndcall.go.kr)

연구현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원화된 국가R&D사업 관리·제도운영 관련 질의응답 창구를 일원화하여 도우미센터를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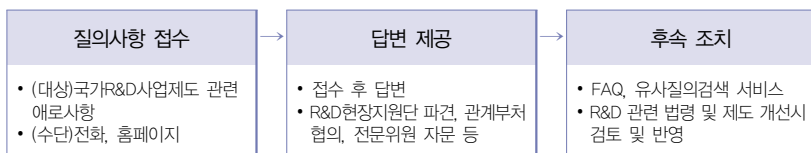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연구원과 연구지원·행정인력, 정부부처 사업담당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인력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연구개발지원인력

✓ 서비스 내용

- 전화·온라인상담 : 국가R&D사업관리 중 발생하는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질의·애로사항의 신속한 상담처리
- 질의응답 검색서비스 : 연구관리와 관련된 유사질의, FAQ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
- 정보제공
 -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련된 법령 등
 - 사업관리, 연구비 관리인증, 간접비 계상기준, 학생 인건비, 보안관리 등

✓ 상담절차



↘ 문의처

www.rndcall.go.kr

미래창조과학부 R&D도우미센터 (02)2110-2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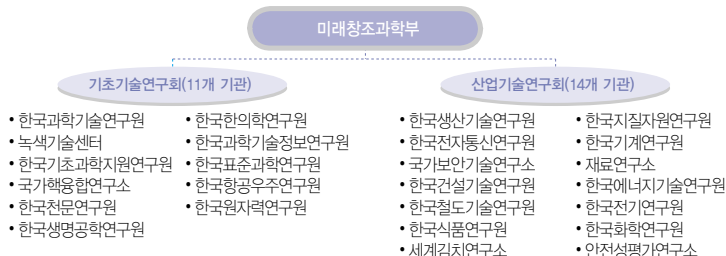
3.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www.smehappy.re.kr)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연) 공동 협력창구로 on-line, off-line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 애로를 접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최적 해결방안을 제시

✓ 서비스 내용

- 지원정보안내
 -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이루고 있는 25개 출연(연)기관에 대한 소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출연(연)과 연계된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등의 지원사업 안내
-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NDSL)안내
- 지원정보찾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장비, 보유기술을 검색, 안내
- 기술상담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사항을 기술상담을 통해 해결
- 상담스토리
 -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상담사례 소개
- 알림마당
 -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문의처

www.smehappy.re.kr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1379, 080-9988-114



4.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www.born2global.com)

국내 벤처기업이 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특허 등 글로벌 창업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내용

- 전문 컨설팅
 - 국제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벤처투자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홍보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 관련 애로사항 상시 컨설팅 제공

구분	주요서비스
법률 서비스	해외현지 법인설립,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적 위험관리, 투자 분석, 인수합병 검토, 투자 자문
회계 서비스	해외진출 유형별 재무적 위험 자문, 세무적 위험 검토, 장부기장 등 회계 자문, 인수합병시 재무적 위험 검토
특허 서비스	지식재산 진단 컨설팅,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기술 거래
투자유치 및 컨설팅	스타트업 투자 지원, Angel 및 VC 투자 타당성 검토, 국·내외 투자 및 Exit(M&A) 지원
마케팅(Marketing)	해외 현지의 시장·기술·기업 동향 및 정부정책 조사 지원,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 및 사업 파트너 발굴 지원, 벤처기업의 현지국 사업기회 발굴 및 지원
홍보(PR)	벤처기업 홍보, 국내외 언론사와 연계한 홍보, 온·오프라인상의 홍보 지원
비즈니스 분석 (Business Analysis)	해외현지 시장 및 기술 조사, 사업기회 발굴, 펀드 및 M&A 지원

- 멘토링
 - 글로벌 창업 선배기업과 후배기업간의 매칭을 통해 멘토링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제공

구분	주요서비스
벤처 1세대 멘토링	벤처 1세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창업·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컨설팅
글로벌 한인 멘토링	실리콘밸리 현지의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정착을 밀착 지원

문의처

www.born2global.com

미래 글로벌창업지원센터 (02)2132-222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02)2110-2854



5.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rsec.or.kr)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사업간 연계, 수요-공급 매칭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일자리 알선 등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산학연의 R&D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 서비스 내용

- 고경력 과학기술인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
- 고경력 과학기술인-기업 간 수요-공급 매칭 지원(일자리 알선)
- 고경력 과학기술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신규 기획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 간 협력 네트워크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개도국 ODA 사업 발굴 및 진출 지원

문의처

www.rsec.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02)3460-9123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정책과 (02)2110-2574



6. 이공계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

이공계 우수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미취업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공계 전문 취업사이트로, 각종 정부인력지원사업 및 이공계 채용정보, 인재검색, 인재 추천서비스 등 다양한 이공계 취업관련 콘텐츠를 제공

✓ 서비스 내용

- 기업서비스
 - 채용정보 게재, 인재정보 검색, 입사지원 관리, 인재추천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채용정보 검색, 이력서 등록 및 경력관리, 취업자료실, 연구소 검색
- 정부인력지원사업 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사업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문의처

www.rndjob.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전문연구요원제도 (02)3460-9088, 9089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02)3460-9084, 9083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02)3460-9121, 9122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02)3460-9088



7.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진행현황 및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내용

- 지원사업 안내
 -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연수, 기타로 나뉘지며, 사업신청이 바로 가능
 - 지원사업 Family 사이트, 지원사업별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
- 참여광장 안내
 - 질문 및 제안방, 칭찬방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진공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참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
 - 민원불편신고, 부정비리신고, 불법브로커신고, 감사 소통방(Hot-Line)을 통해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정보광장 안내
 - 사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정보를 제공
 - 각종서식, 발간자료, 정보공개, 유관기관 연락처, FAQ, 품질마크인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 외에도 직접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
- 알림광장 안내
 - 공지사항과 뉴스가 제공되며, 중진공에서 진행 중인 입찰정보와 뉴스레터 등 최신정보를 제공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개
 - 중소기업진흥공단 안내, 경영공시, 사회공헌, 고객센터현장 등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대한 상세정보 소개



문의처

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센터 (02)769-6700



8.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

창업과 신고, 허가취득, 시험과 검사, 인증 등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기업민원
 - 회사설립안내/신청, 전략물자판정/허가, 전자무역서비스 등
- 시험·인증·실적
 - 인증서, 실적증명서, 전자문서유통, 시험·인증·실적 상담 등
- 기업애로
 - 기업애로처리기관, 기업애로처리절차, 기업애로통합신청
- 자금지원
 - 범부처 R&D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 자금지원 상담
 - 자금지원기관 안내
- 정보광장
 - 입찰 및 사업공고, 나라장터입찰공고, 산업뉴스, 동영상뉴스
- 컨설팅 지원
 - 창업준비, 재무, 인사, 고용, 마케팅, 운영

↘ 문의처

www.g4b.go.kr

G4B통합콜센터 1661-7555



9. 조세·법령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조세·법령에 관한 민원상담 및 법조문, 해석례 등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세청(www.nts.go.kr)

- 세법해석 민원질의
 - 서면질의제도 : 민원인이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해주는 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해주는 제도
-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 세무상담안내 : 인터넷, 전화, 방문상담
 - 상담사례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조문, 법령에 대한 해석례, 별표·서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조문별 3단 보기, 신규조문대비표, 생활법령 정보제공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국세법령 조문, 국세법령에 대한 해석례, 별표·서식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조문별 3단 보기, 개정세법 해설, 조문별 질의·검색기능 제공
- 전자도서관
 - 국세관련 가이드북, 개정세법 해설 등 120건의 발간책자 제공
 - 생활세금시리즈에 관한 126건의 e-book 제공



10.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이를 개인, 변리사, 중소·벤처·대기업 종사자 등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초보자 및 전문가의 수준에 맞는 검색기능 제공
 -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초보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일반검색과 전문가가 각 항목을 조합하여 정밀한 검색이 가능한 항목별 검색으로 구분하여 제공
-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국내 지식재산권 정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해외 특허도 제공
- 별도의 뷰어 설치 필요 없이 공보전문 열람 가능
 - XML 형식의 파일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뷰어 필요없이 공보전문 열람 가능
- 검색기능 외에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 마이폴더, 유사 검색식 보기, 동의어 사전, 인기검색어, 온라인 다운로드, 검색식 저장, 내 검색식 보기 등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 문의처

www.kipris.or.kr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11. ITFIND(www.itfind.or.kr)

IT산업 전반에 관한 국내외 기술, 시장 및 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 DB화하여 IT관련 기업 및 기관에 제공

✓ 콘텐츠 현황

- IT분야 최신 동향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결과보고서, 기술시장보고서, 특허정보, 학술정보, 표준정보, 통계정보, 뉴스, 세미나 동영상, 각종 발간물 등 1,000여만 건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구분		수록정보	수록 기간	DB건수	갱신 주기
연구결과보고서		정착기금으로 수행된 사업의 결과보고서 종합DB	'00년~	26,775건	수시
IT 발간물	분석보고서	유관기관의 IT관련 정책, 기술, 산업, 시장분석 보고서	'00년~	48,543건	일일
	정기간행물	유관기관 발행 정기간행물	'00년~	9,648건	일일
	백서	정보통신관련 백서 및 연차보고서	'00년~	1,792건	수시
유관기관 웹정보		유관기관에서 생성한 단신성 정보	'00년~	37,463건	일일
특허정보		정보통신관련 특허정보	'01년~	9,390,327건	격주
학술정보		정보통신관련 학술지, 프로시딩지 등	'01년~	440,695건	수시
표준정보		정보통신관련 표준정보(TTA 연계)	'01년~	6,188건	수시
뉴스정보		유관기관 새소식 및 IT관련 뉴스	'01년~	22,484건	일일
동영상 자료		최신 교육 및 컨퍼런스 동영상 자료	'07년~	401건	수시
통계정보		정보통신관련 통계간행물 및 통계표	'06년~	7,538건	수시
기타		IT테마정보 등 분류정보, 세미나/컨퍼런스 등	'00년~	46,454건	일일

문의처

www.itfind.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042)710-1133



부록

관련부처
특허청



지원대상
제한없음



12.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

각종 특허조사, 분석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특허정보를 통합 서비스화하여 사용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설정과 업계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시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개발과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서비스

- 국가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中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 국가R&D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특허동향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 특허분쟁지도 보고서
 - 국내특허분쟁지도, 미국특허분쟁지도, 일본특허분쟁지도, 유럽특허분쟁지도, 중국특허분쟁지도 제공
- 분쟁판례정보
 - 미국판, 일본판, 영국판, 독일판, 중국판, ITC 분쟁정보 제공

문의처

www.patentmap.or.kr

R&D특허센터 IP전략혁신팀 (02)3287-421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176



13. 중소기업 범위기준

✓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회적 기업
- 제외대상 :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

✓ 주업종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분류에 따라 주업종 판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 규모기준 적용

-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어느 하나의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표 1]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
 -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기준 적용
- 위의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표 2] 참조)

[표 1]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J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S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http://kostat.go.kr/kssc>에서 확인)

[표 2] 상한기준

적용기준	상한기준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및 직전 3개연도 평균 매출액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임을 유의(관계회사 제도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독립성 기준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회사 간에 지분을만큼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비영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아래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판단
 - 규모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적용 제외 경우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소기업 확인시스템(<http://sminfo.smba.go.kr>)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정보 조회 및 관계회사 현황을 제공, 공시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Index

- 1 관련부처별
- 2 지원대상별





관련부처별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관련부처	사업명	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085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	267
	나노융합2020사업	077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288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075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088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098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08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233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혁신 지원사업	258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080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096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100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9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94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217
	이달의 엔지니어상	286
	전문연구요원제도	203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049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207
기획재정부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215
	Giga KOREA 사업	090
	IR52장영실상	284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021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019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023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024

관련부처	사업명	페이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15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0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0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00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022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026
산업통상자원부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223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145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40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4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2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11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신산업)	1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115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117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220
	기술경영(MOT) 우수기업 포상	293
	기술신탁사업	248
	기술인재지원사업	226
	나노융합2020사업	077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31
	녹색인증제도	27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291
	대한민국기술대상	289
	브레인스카우팅사업	22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245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107
	산업융합촉진사업	105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138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239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135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25
	신기술(NET)인증제도	275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26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33

관련부처	사업명	페이지
	신제품(NEP)인증제도	277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29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228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101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282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299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51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148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2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27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219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064
중소기업청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38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24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166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156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161
	긴급경영안정자금	04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170
	벤처기업 확인	269
	사업전환자금	045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179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175
	성능인증·보험제도	304
	신성장기반자금	040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18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260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221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235
	이노비즈 인증	27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8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297
	중소기업 기술유통방지사업	25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63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236

관련부처	사업명	페이지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241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사업	261
	창업기업지원자금	03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72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21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047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168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159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06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53
안전행정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017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19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19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194
환경부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190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05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10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국토교통부)	185
해양수산부	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187
기상청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199
병무청	전문연구요원제도	203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산림청)	197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302
특허청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06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도	300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250
	지재산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252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254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064
한국정책금융공사	온렌딩(On-lending)	050
	KoFC 프론티어챔프	052
기타	기술보증기금	056
	신용보증기금	061
	R&D 평가등급 특례보증	067



지원대상별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대상별	사업명	페이지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038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24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166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15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021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161
	긴급경영안정자금	042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170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088
	벤처기업 확인	269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066
	사업전환자금	045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179
	성능인증·보험제도	304
	신성장기반자금	040
	신용보증자금	061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혁신 지원사업	258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22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260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22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제도	300
	우수제품 지정제도	30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235
	이노비즈 인증	273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299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18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297

대상별	사업명	페이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25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16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10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236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241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발사업	26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250
	창업기업지원자금	03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72
	첨단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IP)-R&D전략 지원사업	254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213
	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207
	투·융자복합금융자금	047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168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159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064
	환경정책자금융자사업	054
	R&D평가등급 특례보증	067
중소·중견기업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22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113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08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산업/신산업)	1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첨단연구장비경쟁력향상사업)	115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	117
	기술경영(MOT) 우수기업 포상	293
	기술보증기금	056
	기술인재지원사업	226
	브레인스카우팅사업	22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245
	산업융합촉진사업	105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138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239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및 SW융합형부품)	135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25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263

대상별	사업명	페이지
	온렌딩(On-lending)	050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101
	전문연구요원제도	203
	KoFC 프론티어챌프	052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153
중소·대기업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국토교통부)	185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145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40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4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20
	글로벌 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220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19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017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인정제도	267
	나노융합2020사업	077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31
	녹색인증제도	279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19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	291
	대한민국기술대상	289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288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07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194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098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산림청)	197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019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107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차세대통신네트워크)	08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233
	신기술(NET)인증제도	275
	新산업 창조 프로젝트 시범사업	08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33
	신제품(NEP)인증제도	277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096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29

대상별	사업명	페이지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023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10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024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15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0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0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009
	외국인 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217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282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09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94
	이달의 엔지니어상	286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049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151
	지역특화산업기술개발사업	148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195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12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27
	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187
	해외 고급과학두뇌 유치활용(Brain Pool) 사업	215
	해외우수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219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환경부)	190
	Giga KOREA 사업	090
	IR52장영실상	284
중견·대기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252
협동조합	업종공동 기술개발사업	183
연구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022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026
기술보유자	기술신탁사업	248
예비창업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175
	창업맞춤형사업	177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혁신지원제도

2013년 9월 25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미래창조과학부 (02)2110-273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30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